

목 차

기획의도	15년! _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1p
발제	발제1.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의 비판적 분석 --- 5p 민들레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2.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 --- 33p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제3.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52p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	토론1. 김광일 (CBS노컷뉴스 사회부 기자) ----- 81p
	토론2.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85p
	토론3.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95p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2016. 시민감시단 언론 모니터링 활동보고 ----- 107p
	기사 다시쓰기 ----- 108p
	장애표현분석 ----- 132p
	칼럼 ----- 135p
도움자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 ----- 141p
	성폭력사건 보도가이드라인 ----- 142p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정 ----- 144p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 158p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개	----- 163p

15년!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운동의 과제를 만들어왔다. 특히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성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는 사회적 이슈로만 가끔 언론에 드러나는 정도였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비롯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다.

장애여성공감에서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게 된 배경은 2000년 강릉 음촌리 마을에서 지적장애여성이 7년간 성폭력을 당해온 사실이 세상이 알려지고 장애여성공감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여성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애 여성을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고, 우리 상담소도 2001년 8월에 개소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5주년에는 사건을 통해 만나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당시에 비공개 워크숍을 할 때 프로그램 제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십분의 일 혹은 십분의 구’였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만났던 피해자의 대다수는 지적장애여성이었다. 그래서 ‘지적장애’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또 그만큼 몰랐던 것이 많았다. 왜, 무엇 때문에 지적장애여성들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지, 그녀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했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다.

2011년 10주년에는 지적장애여성들에게 응답을 받은 내용들을 드러내고 싶었다. 10년 동안 성폭력피해자로서 만났던 지적장애여성들은 상담소에 와서 ‘심심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돈 벌고 싶어요’ ‘놀러가고 싶어요’ 등의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인 ‘일곱 빛깔 무지개’의 합창을 통해 그녀들의 목소리를 알려내는 행사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지적장애여성들의 유쾌하고 힘 있는 목소리와 울동이 큰 울림이 되었다.

성폭력상담을 통해 피해자들과 일상을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그녀들의 통제된 삶이 선택과 결정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몸을 통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유일

한 자원이기에 가해자들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성적인 대상화, 통제, 착취,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였다. 우리 상담소가 10년이 된 시기에 사회적으로는 ‘도가니’ 광풍이 일 어났었다. 그래서 정부는 최초로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고, 우리 상담소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 관심도 높아지고 지원체계도 늘어났다.

그래서 15주년을 맞은 2016년에는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통해 우리사 회의 장애와 성폭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늘어난 지원체계가 어 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장애인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근거가 피해자의 ‘장애’ 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여부 정도에 주목했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하고자 한다.

우리 상담소의 활동역사는 ‘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지적장애여 성의 낮은 위치성으로 인해 가해져왔던 성폭력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꾸준히 고민하는 과정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넘 어서서 피해자가 가지는 힘을 믿고 함께 차별적인 사회의 변화를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주도의 피해자 지원체계가 늘어나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 성폭력과 장애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한 도전, 성차 별과 장애차별을 없애기 위한 문화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으로 향후 5년, 10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민들레님, 최현정님, 김정혜님, 김광일님, 장임다혜님, 이미경님 감 사드립니다. 몇 달 동안 언론모니터링을 활동을 해주신 시민감시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나무님, 여름님 감사합니다. 더지님도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는 일곱 빛깔 무지개 합창단! 고마워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여러분! 늘 함 께 걸어가고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5년 동안 길게 혹은 짧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해주신 활동가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발제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의 비판적 분석

민들레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왜 언론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2011년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2012년 성폭력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들이 생겨나고 보완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언론을 통해 이 영화가 실제로 2005년도까지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소재로 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성폭력피해 현실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관련 법 개정 및 제도마련에 대한 꾸준한 요구와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는 국회와 정부에 압력이 되었고 결국 2012년 관련법의 개정과 각종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언론은 단순한 사실만을 보도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알려냄으로써 시민·사회의 인식을 대변하거나 여론을 선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정권이나 특정 집단의 뜻에 따라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함으로써 대중을 기만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엔 각종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조회율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수록 언론 보도에 대한 젠더와 장애, 인권적인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시민감시단과 함께 최근 5년 동안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근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모니터링의 기준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 기준에 준하여 분석한 내용과 추가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생각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다루어 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서 언론사와 기자 모두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무리 하였다.

2. 언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얘기

최근 지적장애 청소년인 하은이(가명)의 사건과 김포에서 일어난 이모에 의한 아동사망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은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되어 가해자들은 성 매수자로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하은이의 부모가 성 매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공중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집중 조명되면서 의제 강간의 연령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더불어 지적장애 청소년의 성폭력이 어떻게 성매매로 구성되는지를 보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에 경찰과 검찰에서 하은이가 단지 13세에서 2개월이 초과되어 의제 강간이 아니며 스스로 채팅창을 열었으므로 성매매라고 도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건의 맥락과 피해자의 상황을 좀 더 신중히 살펴보았다더라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였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론이 지적장애의 특성과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감수성과 반성폭력 인식이 향상되었다더라면 이 사건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취약함을 이용한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검색하고 모니터링하다 보니 제목은 다른데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은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한 때 여러 사이트를 통해 다른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지만 꾸준히 이에 대한 후속 기사를 내는 곳은 많지 않았다. 지적장애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이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된 사연이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이후 비슷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하나의 흥밋거리처럼 소비되고 어느새 유행지난 옷처럼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았다. 하은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이 처음에는 온갖 자극적인 제목으로 “아이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불쌍한”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파렴치하고 짐승 같은”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터트리면서 사건의 세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집중한다. 하지만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애여성이 처한 가정 및 사회 환경, 대인관계 등 삶의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사는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더불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는 지진하게 다루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또다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화 되지만 금세 다른 더 자극적인 사건에 의해 잊히는 식이다. 그러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쉽게 소비되는 가십거리처럼 취급되지 않고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독심 있는 보도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또한 김포사건의 경우 당시 피의자인 이모가 사망한 아이의 생모이고, 같이 사는 형부에 의한 성폭행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사실과 그 여성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은 아이 뿐만 아니라 이 지적장애여성에게는 다른 두 명의 아이가 더 있는데 이들 모두 형부에 의한 강간 피해로 인해 낳은 것이고 같이 사는 언니도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이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그로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끔찍한 사건으로 연일보도가 되었지만 이후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언론의 보도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는 5년여 동안 형부에 의한 성폭행으로 3명의 자녀를 낳고, 아픈 언니와 언니의 자녀까지 5명의 아동을 돌보면서 가해자와 함께 총 8명이 한 집에서 살아야 했던 이 장애여성의 삶을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도 있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를 구구절절 씌으로써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기사는 개인의 삶을 극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도리어 언론은 이 장애여성 수년간 지속적으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그로인해 태어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었는지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아무런 맥락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도 지적장애인인 두 자매를 유린한 파렴치한 남성의 치정사건도 아니다. 이는 우리 이웃에서 바로 몇 달 전까지도 벌어진,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던,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이 마침내 극단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인 것이다. 사실 이 가정은 관할 시청에서 3년 전부터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도 이 두 자매가 지적장애로 인해 처할 수 있는 차별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친족인 형부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3명의 자녀를 출산해야 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주변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 사회의 인권 인식을 향상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언론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3.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

단순히 사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도 결국엔 그 기사를 쓴 기자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기사는 해당기자의 성인식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관점이 그 사건을 보도하는 태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 얘기했듯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이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작성된 기사는 대중들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는 보도태도를 보이는가?
- ②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않은가?
- ③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않은가?
- ④ 성폭력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엄벌주의적인 처벌 강화만을 대응방안으로 내놓는 보도를 하고 있는 않은가?

4.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면

가. 기사 제목 분석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2012년부터 지난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였고, 우선 기사들의 제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구분	기사제목
1)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40대 입건 “단둘이 있으니 갑자기 욕정이...1) • 아내 암판정 받자 욕망 충족하려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2) •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30%는 ‘사이코패스’3) • 성범죄 40%는 음주상태...알코올이 ‘충동조절장애’ 유발4) • 성폭력 ‘토요일 밤 주택가 노상’ 위험5) • “넌 아프냐? 난 즐겁다!” 성범죄자 성욕 뒤에 숨은 괴물6) • 지적장애 하은이 성 짓밟은 20대남 항소취하7) • 지적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8) • 재가지적장애인 성폭력예방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9)
2) 장애에 대한 편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30%는 ‘사이코패스’ • “찐빵 사줄게“...지적장애女 성추행한 공무원 실형 확정10) • "재워주겠다" 10대 지적장애인 간음한 20대 집행유예11) • 의붓오빠가 여동생 성매매...지적장애여성 집중관리12) • 2만원 줄게"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 실형13) • 지적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 • 재가지적장애인 성폭력예방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3)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女들 성노리개 삼은 50대 징역 6년14) • 얹혀살던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검거15) • 7세 지능 13세 소녀, 매춘녀로 낙인 찍힌 사연 16) • 지적장애 하은이 성 짓밟은 20대남 항소취하
4) 가해자의 언어로 사건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40대 입건 “단둘이 있으니 갑자기 욕정이...” •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장애 앓는 사촌누나 성폭행...막정 20대17) • “찐빵 사줄게“...지적장애女 성추행한 공무원 실형 확정 • "재워주겠다" 10대 지적장애인 간음한 20대 집행유예 • 13살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 “개가 꼬셨다” 주장18) • 제주도판 도가니 피고인, 피해자에 “나가면 피바다” 협박편지19)
5) 가해자의 비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짐승 같은 아버지와 삼형제, 지적장애 친딸·조카들에 몹쓸 짓20) • 인면수심 아버지 지적장애 딸 성폭행21) • 성폭행, 위장결혼 _장애여성 짓밟은 3명의 ‘악마’ 22) • 지적장애 2급 성폭행' 인면수심 노래방업주23)
6) 가해 행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女들 성노리개 삼은 50대 징역 6년 • 짐승 같은 아버지와 삼형제, 지적장애 친딸·조카들에 몹쓸 짓 • '나쁜 이웃'에 짓밟힌 지적장애 여성들의 인권24) • 청소년·장애인 마약 투약한 뒤 강간한 '못된 어른'25)

7) 취약한 위치의 가해자에 대한 편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불법체류 네팔인 실형²⁶⁾ • 에이즈 감염된 20대 男, 전자발찌 차고 장애인 성폭행²⁷⁾
--------------------------------	---

첫 번째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바탕이 된 제목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라는 왜곡된 통념을 바탕으로 성폭력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또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용인 될 수 있다고 믿는 남성젠더의 언사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사례이다. (예.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40대 입건 “단둘이 있으니 갑자기 욕정이…”*) 이를 통해 성폭력은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30%는 ‘사이코패스’*” 라는 제목의 기사는 2011년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94%가 정신질환자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법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립된 곳으

-
- 1) 일요신문, 2013.5.14.
 - 2) 뉴스1코리아, 2015.5.28.
 - 3) 연합뉴스, 2013.4.8.
 - 4) 뉴스인, 2016.7.24.
 - 5) 데일리안뉴스, 2013.3.20.
 - 6) 신동아, 2015.12.31.
 - 7) 노컷뉴스, 2016.5.26.
 - 8) 전남일보, 2015.1.26.
 - 9) 아시아뉴스통신, 2015.7.9.
 - 10) 뉴스1코리아, 2014.8.5.
 - 11) 뉴스1코리아, 2015.7.30.
 - 12) 노컷뉴스, 2013.6.30.
 - 13) 뉴스1코리아, 2016.7.14.
 - 14) 뉴시스, 2015.1.15
 - 15) 연합뉴스, 2012.10.12.
 - 16) 일요신문, 2016.5.20.
 - 17) 국민일보, 2015.2.24.
 - 18) 인사이트, 2016.6.12.
 - 19) 세계일보, 2015.6.22.
 - 20) 일요뉴스, 2012.11.15.
 - 21) 노컷뉴스, 2016.8.23.
 - 22) 노컷뉴스, 2015.8.24.
 - 23) 뉴스1코리아, 2012.10.30.
 - 24) 연합뉴스, 2013.9.13.
 - 25) 뉴스1코리아, 2015.7.28.
 - 26) 뉴스1코리아, 2015.11.8.
 - 27) 뉴스1코리아, 2014.10.2.

로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을 통해 실제 기사내용의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성폭력 범주는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통념을 강화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폭력 범죄자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적인 증상으로 치환함으로써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도록 한다.

“성범죄 40%는 음주상태...알코올이 ‘충동조절장애’ 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성폭력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성폭력과 음주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성폭력은 결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술에 관대한 우리사회의 문화에 기대어 ‘술 먹고 한 실수’이니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는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다루는 기사들의 제목에서는 필요이상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예, 성폭력 ‘토요일 밤 주택가 노상’ 위험) 장애여성을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녀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제목의 기사들(예, 의붓오빠가 여동생 성매매...지적장애여성 집중관리, 지적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도 쉽게 발견 되었다. 이는 여성의 삶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제하고, 더 나아가 이는 밤늦게 다니거나 관리되지 않은 지적장애여성 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왜곡된 통념이 강화되는 것이다. 더불어 “재가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라는 기사의 제목은 앞의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을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취약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두 번째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제목들이 쓰여 지고 있다. 앞서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30%는 ‘사이코패스’” 라는 기사의 제목이 갖는 문제점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성폭력 범죄의 대다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을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문제적인 기사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와 배제를 정당화하게 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를 견고하게 하는 근거로 작동하게 한다.

또한 “2만원 줄게”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 실형 등과 같은 기사의 제목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애여성은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 아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로 인해 수사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 자체를 의심 받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증명하기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지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능력과 학습,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의 습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사회생활 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 대한 정형화된 몇몇 특성이 과장되게 일반화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렇듯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극단적으로 무력화된 피해자 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존재하는 인지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권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간과하게 만든다.

“*지적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에서 보여지 듯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통제를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가지적장애인 성폭력예방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라는 제목에서는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문제적인 관점이 깔려있다. 더불어 ‘재가지적장애인’을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이 강화된다.

세 번째로,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장애女들 성노리개 삼은 ~*”, 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애女들”이라는 용어가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女’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또한 “*성노리개*” 라는 표현은 인간인 피해자를 물건인 노리개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엎혀살던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검거*”, 에서 피해자는 ‘엎혀살던’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엎혀살았다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장애인이 의존적인 존재로, 더 나아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장애여성이 피해자인 기사에서는 사건과 상관이 없는 피해자의 상황이 극단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네 번째로, 가해자 언어를 제목으로 인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가해자의 논리가 확산되거나 대중으로 하여금 범행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기사의 제목에 큰따옴표를 사

용하여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예는 자주 발견하게 된다. “단둘이 있으니 갑자기 욕정이…”, “개가 꼬셨다” 등과 같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대로 쓰임으로써 가해자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언어는 대부분 삭제되는 상황에서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가면 피바다”라는 가해자가 보낸 협박편지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대중은 물론 보복을 두려워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

“찐빵 사줄게”…지적장애女 성추행한 ~, “재워주겠다” 10대 지적장애인 간음한 ~, “2만원 줄게” 20대 지적장애 여성 ~, “집 구경시켜줄게”…장애인 여성 데려가 ~ 등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가해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소한 보상이나 친절에도 쉽게 유인되는 지적장애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들로 인해 지적장애여성들의 장애특성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비인격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짐승 같은 아버지와 삼형제, ~, ‘인면수심’ 50대 중형”이라는 기사 제목에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짐승 같은’ 또는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이들의 행위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고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즉, 성폭력이 일상의 권력관계 안에서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기사를 읽는 대중들로 하여금 성폭력의 일상성을 부정하고 성폭력의 문제를 자신과 분리하여 타자화하기 쉽도록 한다.

여섯 번째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행위를 축소하는 표현이 많다. 앞서 지적한 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짐승 같은’ 비인격화된 존재로 그리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해자들은 “몹쓸 이웃들”, “나쁜 이웃”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표현함으로써 이들이 한 범죄행동의 심각성이 축소되어 인식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그들이 한 행동은 “몹쓸 짓” 정도로 축소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범죄 행위가 희석되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통해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로, 성폭력 가해자 중에서도 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경우에는 그 취약함이 가해 행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표현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왜곡될 수 있다.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불법체류 네팔인 실형”, “에이즈 감염된 20대 男, 전자발찌 차고 장애인 성폭행”이라는 기사 제목에서처럼 가해자들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네팔인)이고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더욱 중한 범죄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와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혐오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 2급 성폭행’ 인면수심 노래방업주”라는 기사는 노래방 업주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모든 노래방 업주는 위험하니까 경계를 해야겠다거나, 노래방 업주를 혐오하게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저지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를 한 개인이 아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기 쉽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더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피가해자의 관계를 단순 서열화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성폭력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일방적으로 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그 힘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나이, 정체성, 자원, 젠더, 장애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다층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등의 사회적 위치만이 강조되면 성폭력의 본질적인 문제인 젠더 권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기도 한다.

나. 삽화 및 사진 분석

기사 제목과 함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기사에 있는 삽입되어 있는 삽화나 사진 등의 시각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기사의 내용을 짐작케 하기도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미지 컷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앞선 기사 제목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들 중 문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이미지의 지나친 선정성이다.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다룬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자체가 성을 상품화한 포르노그래피라고 착각 할 만큼 해당 기사와 무관한 선정적인 이미지나 영화 속의 자극적인 장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성

폭력 사건을 범죄가 아닌 흥밋거리로 소비하고 성폭력을 성적인 문제로만 보게 하여 권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p>MBN '진짜발찌 훼손 후 성폭행' 40대 안성서 검거... '나 흘간 무슨일이?' 본문듣기 설정</p> <p>기사입력 2014-08-10 16:01 기사일문 1 공감해요</p> <p>진짜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가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p>  <p>MBN 2014.08.10.</p>	<p>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적장애를 겪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송 아무개 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p>  <p>영화 <나의 노예가 되어주세요> 스틸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p> <p>일요신문 2013.10.18</p>
---	---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형화된 모습으로 '피해자다움'을 고착화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모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집에 갇혀 지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묘사하는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피해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 자체를 의심하는 통념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를 과장되게 크게 표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매우 왜소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 경우 피해 당시 피해자가 했던 노력이나 저항은 쉽게 무시되고 결국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주체화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 A씨(31·여)를 전남 해남군정 지하주자장으로 유인한 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뉴스원 코리아 2016.02.24..</p>	 <p>JTBC 뉴스 2016.06.022.</p>
---	--

세 번째로, 가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희화하거나 비인격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일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즉, 성폭력 가해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성범죄는 ‘짐승이나 괴물 같은’ 특별한 존재가 저지르는 것이라 착각하게 만든다. 또한 희화된 가해자의 모습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성폭력 예방이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움에 있어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네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를 선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하였다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게 한다.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성폭력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때 등장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은 마치 그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인사이트 기사의 사진처럼 모텔 쪽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가 강조되면서 기사내용과 맞물려 마치 피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상황이라는 인상을 준다. 더불어 성폭력 관련 기사에서 길을 걷는 민소매 옷을 입은 여성을 보여주거나,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여성의 일상적인 모습과 성폭력 사건보도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마치 여성의 신체 노출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성폭력이 여성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에 의해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p>발달장애인 성범죄 느는데 대책은 안 보여</p>  <p>한국일보 2016.05.02</p>	<p>‘그알’ 13살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개가 꼬셨다” 주장</p>  <p>인사이트 2016.06.12.</p>
--	--

다. 기사 내용 분석

검색한 기사 중 일부 기사의 내용을 성폭력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 2014년 제작한 <성폭력사건보도수첩>의 보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장애와 젠더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더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이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비하, 혐오 등을 조장하는 표현이나 이러한 관점을 강화하는 기사는 아닌지 살펴보고,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의 장애만을 사건의 원인으로 부각하여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았다.

애초에는 가이드라인별 문제적인 기사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분석을 하다 보니 문제적이라고 지목된 대다수의 기사들은 대부분 여러 항목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어떤 기사의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장애 및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무지와 장애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사도 존재하였다.

기사1. 성범죄 40%는 음주상태...알코올이 '충동조절장애' 유발(뉴스인.2016.07.24.)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과 같은 인기 피서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음주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취상태의 성폭력 범죄 건수 역시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 ▲2015년 824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략) 특히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는 음주와 연관이 많다. 혼잡한 인파, 노출, 물놀이 등 한껏 들뜬 분위기에서 헌팅 등 즉석 만남이 쉽게 이뤄질 수 있고 음주까지 더해지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중략) 조사 결과 김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알코올은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억제시켜 사람을 본능적으로 변하게 만든다"며 "술 자체가 충동조절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충동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중략) 전용준 원장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40% 이상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름 휴가철 기간에 불미스러운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기사 첫 줄에서 이미 “무분별한 음주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술자체가 충동조절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충동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40%이상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 휴가철 기간에 불미스러운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다.” 며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는 마치 성범죄는 충동조절이 안 되서 발생하는, 즉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통념을 강화하는 기사로 성폭력은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인식이 결여된 문제적 기사이다. 또한 과음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성범죄에 휘말린’ 사람이 피해자라면 이는 피해자가 과음을 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는 피해자가 성범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통념을 그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중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

분만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거나 인용하여 마치 객관적이거나 전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이 기사는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 상태의 성폭력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총성폭력 발생 건수는 22,933건으로 그 중 주취 상태의 성범죄 건수는 6181건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 중 주취 상태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전후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40%가 음주상태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은 맞지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술 먹고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고, 실수라고 변명하는 가해자의 언사가 용인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문화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기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주취폭력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지, 또 술을 핑계 삼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어야 하지 않을까?

기사2. 「지적장애 4자매 상습 성추행... 섬마을 이웃 ‘나쁜 아저씨들’」 (경향신문. 2012.07.16.)

- “과자 줄게” 꼬여내 못된 짓 경찰, 1명 구속 2명 불구속

인천의 한 조용한 섬에서 마을 어른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일가족 네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섬마을이 충격에 빠졌다.

이 섬에 살고 있는 ㄱ씨 부부는 1남4녀를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공공근로사업 등을 하면서 힘겹게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다. ㄱ씨 부부와 딸 4명은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진다. (중략)

마을 주민 ㄴ씨(47)는 가끔 ㄱ씨의 집을 찾아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기도 했다. 아이들은 평소 ㄴ씨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ㄴ씨는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 ㄴ씨는 ㄱ씨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면 옆방으로 건너가 네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중략) ㄴ씨는 ㄱ씨의 딸들을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이나 이 같은 방법으로 상습 성추행했다.

‘인면수심’의 주민은 ㄴ씨만이 아니었다. 이 마을 70대 노인인 ㄷ씨도 ㄱ씨 딸들을 그동안 4차례 성추행했다. 마을에서 가게를 하는 50대 ㄹ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섬마을 네 자매 성추행 사실은 이들 자매가 다니는 학교의 한 교사가 이들과 상담하는

과정 중 드러났다. (중략)

주민들은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중략)

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홍연표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54)은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아이들을 상대로 마을 어른들이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3. 친구 할아버지까지...마을 어른들이 지적장애아 성폭행(한겨레, 2012.11.28.)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같은 마을 어른들이 4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붙잡혔다. 성폭행 피의자 중에는 피해 소녀의 아버지 지인과 친구 할아버지 등도 포함돼 있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13)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7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아무개(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의 친구 할아버지인 김씨는 피해자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인 2009년 3월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집에서 ○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폭행 뒤 ○양에게 용돈으로 5000원~1만원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이아무개(57)씨도 ○양을 성폭행하는 등 ○양은 같은 지역 주민 5명으로부터 4년간 성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의자 중에는 ○양의 친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인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양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데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이들은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정자, 차 속, 방갈로 등에서 성폭행을 하면서 성인 포르노에 나오는 행위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농사일로 집을 자주 비워 범행이 장기간 계속돼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다리가 불편한 이씨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장애인 돌보미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졌다. 이 돌보미는 이씨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양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덕일 무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성폭행범들이 ○양의 휴대전화로 연락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도 이런 사실을 장기간 알아채지 못했다. 피의자들이 1~6번씩 성폭행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양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진술을 제대로 못해 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은 현재 전북 전주의 한 쉼터에서 살면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기사 2와 3, 두건 모두 지적장애 청소년(들)을 한 동네의 이웃들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기사 모두 피해 청소년들의 지적장애를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진다.”거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1년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이는 단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은 부모들도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적 자원도 취약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해자는 평소 아이들이 ‘큰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으며, 술을 먹고 자고 갈 수 있을 만큼 친밀감을 가지고 과자를 사주는 친절한 사람으로 인식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가족의 부모에게는 비장애 성인 남성으로서 의지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저러한 관계와 맥락이 쌓인 장기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된 권력을 이용한 폭력은 너무도 일상적이라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피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갖게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1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4자매에게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보도는 섬마을이라는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적장애인 가족의 취약성이 어떻게 이용되고 폭력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이 줄어들까 고민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나,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실수 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방식보다는 말이다.

또한 두 번째 기사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장애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기사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가해자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여러 장소를 열거하면서 그곳에서 “성인 포르노에 나오는 행위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는 경찰의 말을 기사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상상을 하게 하는 선정적인 기사라고 하겠다.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듯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보도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엇을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성인 포르노 속의 행위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을 알려야 했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도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권력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가정방문 장애인도우미(‘장애인 활동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아돌보미’ 등이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표현되

는데, 이에 대한 용어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의해서 드러난 사건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고, 피해가 지속적이고, 피해자의 장애를 잘 아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가해자인 매우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사4. 지적장애인 34시간 '엽기 성고문'...여고생 일당 중형 선고(뉴스원. 2015.11.12.)
법원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장기격리 필요"**

지적장애인을 꺾어 모텔에 가둔 채 폭행과 성추행 등 엽기적 고문을 한 대학생과 여고생 일당에 중형이 선고됐다. (중략)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A씨를 모텔로 유인·감금한 뒤 동영상을 촬영,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A씨에게 침과 담뱃재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거부하면 폭행과 함께 맨살을 담뱃볼로 지지는 등 학대했다. 또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부위를 때리고 자위행위를 강요했다. 심지어는 A씨 항문에 칫솔을 삽입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장기 매매를 모의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5. '조카가 보는데...' 지적장애 제수 성폭행한 70대 (대구CBS. 2015.12.03.)
대구지법, 인면수심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

지체 장애를 앓는 조카가 보는 앞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중략)

이어 "가장을 잃은 친동생의 식구들을 보살펴 준다는 구실로 데려와 경제적,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정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중략)

최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쯤 경북에 있는 원룸에서 조카(20,여)가 함께 있는데도 "성 관계를 하자"며 지적장애 2급인 제수(50)를 한차례 성폭행했다.

앞서 2009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조카(당시 여중생)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01년 시각장애 1급인 동생이 투병 끝에 사망하자 장애가 있는 제수와 조카(지체장애 6급)를 돌본다는 구실로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왔다. 매달 60~120만 원의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대신 수령해 관리하면서 용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온갖 허드렛일을 맡기고 부렸다. 최씨가 제수와 조카를 학대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이들은 2014년 9월 분가했다.

기사 4 와 5의 경우 공통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 장애를 앓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장애를 질환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장애를 병리화하는 것의 문제점은 결국 장애를 치료해야할 질병으로, 그래서 노력하여 치료하면 극복해야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를 쓰도록 장애인의 삶을 강요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갖게 되는 과정 안에서 질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장애가 질병은 아니다. 또 이 두 기사는 피해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의 가족사와 사생활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 피해자 보호 우선하거나 선정적 보도 지양하기라는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사례라 할 것이다.

기사 6. 지능장애 아동, 성폭력 주변에 알리지 않아 (코메디닷컴. 2016.05.26.)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10명 중 8명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적 장애 아동 10명 중 5명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였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지능이 낮은 경우, 특히 언어성 인지능력이 낮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인지 수준에 맞춘 성교육과 언어적 표현을 촉진시키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내원해 평가한 총 1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중략)

피해자는 여성이 8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군은 7세 이상 13세 미만이 75명으로

전체 49%를 차지했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이 46명으로 30.1%를 차지했다. 지적 수준을 봤을 때는 정상 지능이 124명(81%), 경계선 지능 11명(7.2%), 지적 장애 18명(11.8%)으로 약 20%가 비정상 지능 피해자였다. (중략)

정상 지능 군의 경우 자발적 폭로가 79명으로 전체 63.7%를 차지했다. 경계선 지능 군은 비자발적 폭로가 80%를 차지했고, 지적 장애는 자발적 폭로와 비자발적 폭로가 각각 50%에 달했다. 가해자는 기존 연구와 같이 10대, 면식범이 가장 많았고, 39.3%가 근친 범위에 해당했다. 즉, 정상범위 이하 지능 피해자의 과반 이상이 비자발적 폭로에 해당했고, 경계선 지능군의 10명 중 8명이 비자발적 폭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경계선 지능군이 성폭력 피해사실 폭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중략)

따라서 지능이 낮은 경우, 특히 언어성 인지능력이 낮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인지 수준에 맞춘 성교육과 언어적 표현을 촉진시키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승민 교수는 “낮선 나쁜 사람이 가해자로 묘사되는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교정해, 면식범 가해를 예방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상범위 이하 지능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정과 관련 시설 및 특수 학교 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고 보호자와 학교 또는 시설 인력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군이 피해사실 폭로에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과 의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최신 호에 게재됐다.

기사 6의 제목의 ‘지능장애’라는 장애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며, 기사내용 중 성폭력 피해자들을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11명(7.2%), 지적 장애 18명(11.8%)으로 약 20%가 비정상 지능 피해자였다” 라고 표현하였다. 정상 대 비정상의 구분 짓기를 통해 지적장애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이나 배제를 정당화하는 구조를 합리화하는 비인권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계선 지적장애 아동 10명 중 8명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 언어적 표현을 촉진시키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쓰고 있다. 우선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리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인지를 하였다고 해도 가해자와 관계,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의 취약성, 지지적인 관계망과 같은 사회적 자원

의 부재 등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즉,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 제한이 있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이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경계선 지적장애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 이유를 ‘판단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고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하여’ 그러하다는 입장의 연구결과를 아무런 비판 없이 인용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바탕이 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장애, 비장애를 떠나 성폭력 피해는 누구라도 쉽게 주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이는 단순히 표현력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표1] <성폭력사건보도수첩> 보도가이드라인

<p>01.잘못된 통념 벗어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 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형상이나 절제 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인식과 양성불평등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낯선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이 여성의 순결을 훼손한 일, 치유되거나 극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p>02.피해자 보호 우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p>03.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인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p>04.신중하게 보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p>05.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피해자 보호제도나 관련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나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성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5. 모니터링 기준 다시 생각해보기

지난 5년간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기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기준으로 정했던 것들이 갖는 의미는 최소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문제적이라 분석했던 기사들이 보도될 수 있었던 인식의 기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고, 그것은 오랫동안 언론과 사회의 인식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통념이 작동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언론 보도 모니터링 활동은 이러한 통념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 분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성폭력이나 장애와 관련된 편견이나 왜곡

된 통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모니터링 기준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와 지향해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 번째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는 보도태도를 보이는가?’ 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왜곡된 통념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 유발론” 일 것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언가 가해자에게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라는 남성중심의 신화와 맞물려서 피해 여성의 특정 행동(또는 옷차림, 태도 등)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였기 때문에, 그 남성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성폭력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가해자들의 논리일 뿐이다. 하지만 참으로 오랫동안 남성 집단을 통해 견고해지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20대 여성을...’, ‘채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여성들의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는 여름철에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등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 기사들을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기사는 여성이 늦은 밤에 길을 다닌 것이,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신 것이, 또는 더운 여름에 맞는 짧은 옷을 입은 것이 마치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이유라고, 그래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 시키고 견고하게 한다.

더 나아가 가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가해자의 언어와 논리로 사건이 규정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게 된다. 유명철 사건 보도에서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놀려서 죽였다”는 가해자의 말은 온갖 언론에서 인용글로 보도되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결국은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면서 몸가짐을 조심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기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피해를 당할만한 행동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 했을 것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많은 피해자들이 결국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기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명철 등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폭력이란 단지 성욕을 참지 못하는 일부 남성의 우발적인 사고라거나,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특히 가해자들이 ‘명문대 학생’, ‘대기업 간부’, ‘저

명한 교수' 등과 같은 소위 기득권 집단일 경우에는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또는 억울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우발적인 실수라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조건의 차이로 인해 작동하는 수많은 힘의 차이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시 발각이 되더라도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실행 할 수 있었던 계획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묘사는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마치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으로 자살시도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도 있지만 몇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만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정형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도방식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얻기에 주효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중에게 순수한 피해자상이라는 것을 가지게 한다.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의심을 하고, 결국 피해가 아니지 않느냐는 추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하였고 감정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피해자 각 개인이 가지는 삶의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배제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 상에 대한 정형화를 강화하는지 여부와 가해자의 언어나 논리만을 보도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고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거나, 도리어 가해자를 동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삭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피해자에게 2 차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다. 성폭력 사건보도에 있어 가장 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 선정성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사실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 하에 성폭력사건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기 쉽다. 어떤 이는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된 기사를 대중이 읽음으로써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 행위의 잔혹성을 느끼게 되어 범죄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접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국가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거나, 피해자를 범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함으로써 같은 인간으로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공감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은 피해내용이 활자화되어 기사로 검색 될 때마다 당시의 고통을 상기하게 되고 피해 상황을 복기함으로써 다시 피해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마치 소설 속의 등장인물처럼 극화함으로써 이 사건이 현재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 독자가 성폭력 사건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나 인권의식의 문제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보기보다는, 어느 개인의 불행한 사건쯤으로 여기며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게 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피해 상황 묘사나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의 자극적인 기사는 마치 포르노그래피처럼 단순한 흥밋거리로 소비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극화된 성폭력 사건 보도는 피해를 현실과 분리해서 보게 만들고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라 여기게 한다. 이렇게 타자화 된 문제는 그것을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포기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보호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라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거나,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직업이나 과거 범죄 이력, 가해자 또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한다. 결국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보도 태도는 매우 문제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우선 여부,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우려, 피해자나 주변인의 과거이력을 흥밋거리로 다루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세 번째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보도의 대다수는 지적장애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등장하는 지적장애여성은 마치 ‘영원한 아이’처럼 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로 그려지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다반사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순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같은 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더욱 ‘나쁜’, ‘짐승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기 쉽다. 그러나 우리 상담소에서 지원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 경험의 지적장애여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원한 아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들이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들이 자신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만큼의 충분한 성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경제적 힘의 차이와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로 인해 동

등한 권력을 가지고 협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그녀들의 취약함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가해자들의 의도와 이를 행동으로 옮겨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작동되는 사회구조이다.

또한 피해자로서의 지적장애여성이 절대적인 약자로 그려지는 것과 대비적으로 가해자가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다른 모든 맥락은 삭제되고 정신장애라는 것만 남아 통제할 수 없는 무엇으로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인 이 가해자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에게 상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대적 박탈감은 여성혐오라는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손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선택하여 살해함으로써 여성혐오라는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문제를 한 정신질환자의 병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였고, 많은 언론은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역할을 하였다. 마치 깔대기처럼 모든 문제가 가해 남성의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를 비판하는 것으로 문제의 쟁점이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비록 시민들과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혐오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혐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주요 언론사의 보도 태도로 인해 그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건의 원인을 피·가해자의 장애로만 규정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장애 비하적인 잘못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성폭력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엄벌주의적인 처벌 강화만을 대응방안을 내놓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결국 그러한 통념이 강화되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교육의 방향이 근본적인 원인과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가지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몇몇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언론에서 화학적 거세라는 자극적인 언

어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이 마치 몇몇 변태적 성향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그러한 변태적 성적 욕구가 사라지면 성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한다. 이는 대중들로 하여금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권력의 문제, 즉 남성과 여성, 장애와 비장애, 나이 많음과 어림, 돈이 많음과 적음, 지식의 차이, 지위의 차이 등등의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역동과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개인의 통제하지 못한 성욕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성평등 교육이나 인권교육,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러한 대중의 반응을 그대로 대응책이라며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는 그에 준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좀 더 확실히 하고자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그로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가해자들로 하여금 명확한 증거만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을 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을 보도함에 있어 화학적 거세나, 전자 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등의 실효성 없는 방안만을 나열하거나, 대중의 분노에 편승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대책이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5. 마무리 하며

지금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 기사 제목이나 삽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마치 모든 언론 보도가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것 중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보도가 가지는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바른 관점으로 보도를 하는 기사들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대중의 인식과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모든 기사가 장애

인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의 목적은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보도 원칙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다.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인권보도준칙]과 2012년에 발표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그리고 2014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이 제작한 <성폭력사건보도수첩>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 이미 많은 지침과 원칙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는 이러한 지침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주최한 미디어 모니터링 토론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당시 토론자로 나온 현직 기자에게 ‘기자들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언론 보도 지침들에 대한 교육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즘 기자들은 들어올 때 이미 장착을 하고 들어온다.” 고만 답하고 이후 언론사 자체의 구체적인 교육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약 언론사의 공식적인 보수교육 있다면 그 과정 안에서, 없다면 새롭게 개설을 해서라도 인권언론보도준칙과 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장애와 젠더, 그리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보통 입사 초기에는 아니어도 갈수록 무뎠질 수 있는 젠더, 장애, 소수자 등 인권과 관련된 감수성을 끊임없이 민감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자로서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는 요즘 같은 정보 홍수의 시대에 올바른 관점을 가진 언론인으로써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성 평등적인 인권사회로 가기 위한 운동 안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언론 보도 모니터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거나 강화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그로인해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더불어 문제적인 기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는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I. 들어가며

2013년 6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시행으로 드디어 모든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가 되었다.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²⁸⁾ 유사강간죄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침입죄’가 신설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의 범위에 ‘촬영 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가 추가되는 등 그동안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큰 변화를 겪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대폭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되던 법률조력인제도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로 이름을 바꾸어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확대·적용되었고, 피해자변호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며,²⁹⁾ 증인지원관 및 증인지원시설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³⁰⁾가 도입되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규정만 있고 실제로 적용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가는 현재,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13년 이후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지원을 시작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 중 10건을 추려, 피해자 지원제도가 개개의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³¹⁾ 모든 제도에 주목한 것은

28) 형법 강간죄 규정과 성폭력처벌법이 모두 개정되었다.

29)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 출석권이 피해자 조사 시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으로 구체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공판준비절차 출석권, 의견진술권 신설

30)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 12. 19.부터 시행되었다.

31) 분석 과정에는 장애여성공감의 배복주님, 민들레님, 여름님, 나무님과 고려대 법학연구소의 김정혜님, 그리고 필자가 함께 하였다. 상담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제를 좁혔고, 10건의 사례 중 5건을 김정혜님이, 나머지 5건을 필자가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에 관하여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원고는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아니고, 성폭력전담수사관의 역할(주로 수사관의 인식 및 상담소와의 협업 관련), 피해자국선 변호사의 역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에 집중하였다. 위 제도들은 상담소가 피해자를 지원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거나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각 지원 사례의 개요를 정리하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상담소가 지원한 성폭력사례를 검토하므로, 당연히 상담소가 어떻게 형사사법절차에 개입하여 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례에서 나타난 상담소의 역할도 간단히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법절차의 관계자들이 주의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분석 대상 사례의 개요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 10건의 사건 개요 및 형사사법절차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사례1]~[사례10]까지의 사건 개요

사 례	피해자특성	가해자특성/ 피해자와 관계	죄명	결과 ³²⁾	특이사항
1	지적장애3급, 30대	20대/ 채팅앱	장애인위력간음,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협박, 절도, 사기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동영상 협박
2	A-지적장애2 급, 20대 B-지적장애2 급, 20대 C-지적장애2 급, 10대	50대/ 피해자 모의 지인	1심-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2심-장애인위계등간 음, 장애인위계등추행	1심 - 무죄 2심 - 징역 3년 6월(C에 대한 장애인위계등 추행부분 무죄) 상고기각	2심에서 공소장변경
3	지적장애3급, 10대	A-20대, 지적장애/ 동사무소직원 B,C-10대, 지적장애/ 동네사람	13세미만미성년자강 간, 장애인준강간, 특수준강간(B,C)	A-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B,C-징역2년,집행 유예3년 각 항소기각	당초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 중 지적장애가 있고 자백한 남성들만 기소됨 / 국민참여재판

4	자폐성장애2급, 30대	3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장애인강간, 강요	징역6년6월 상고취하	
5	지적장애2급, 30대	60대, 뇌병변장애4급/ 공원에서 만남	1심-장애인준강간 2심-장애인준강제추 행	1심-무죄 2심-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2심에서 공소장변경
6	지체장애1급, 지적장애3급, 20대	사건A-피고인 1,2 택시기사 사건B-70대/ 서울역에서 만남	A-장애인준강간 B-장애인준강간	A-각 징역4년(1,2심) B-징역3년6월, 상고기각	사건A, B는 별개 사건 사건A 1심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
7	지적장애2급, 10대	50대, 지체·척추장 애 6급/ 친부	장애인위계등간음	징역8년 향소 및 상고 기각	피해자의 모가 지적장애1급 이혼소송
8	지적장애3급, 30대	지적장애2급, 지체장애6급/ 나이트클럽 부킹	강간, 절도	1심-징역3년 2심-징역1년6월 상고기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손해배상 별도 청구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위증으로 피소(무료법률구조)
9	남성, 지적장애(경 계선추정), 뇌병변장애1 급, 10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2급 20대/ 시설 입소자	장애인준유사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10	지적장애2급, 10대	60대/ 슈퍼마켓주인	장애인간음	징역3년 향소 및 상고기각	

32) 심급 표시가 없는 것은 1심의 결과이고, 이후 사건 진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 [사례1]~[사례10]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적 지원 내용

사 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성폭력전담 수사관 경찰/검찰	신뢰관계인 수사/공판	진술조력인 수사/공판	상담소지원내용 ³³⁾
1	○	○ / 확인 불가	○(상담원) ³⁴⁾ / ○(상담원)	X / X	- 진술녹화 전 상담소에 연계됨. - 진술녹화에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함. - 피해자 증인출석 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의 역할도 함께 했다는 평가가 있음.
2	○(변경)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X(제도 시행 전)/ X	- 1심 선고 후 항소심 공판 전 상담소에 연계됨. - 피해자국선변호사 변경신청.
3	○(변경)	○ / 확인 불가	○(상담원)/ 확인 불가	X / 확인 불가	- 진술녹화 전 상담소에 연계됨. - 진술녹화에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함. - 피해자국선변호사 변경신청.
4	X(제도 시행 전)	○ / 확인 불가	○(1차-피해 자의 모, 2차 -상담원) / ○	1차-확인불가 2차-X / X	- 1차 진술녹화 후 상담소에 연계됨. - 2차 진술녹화에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함.
5	○	○ / 확인 불가	○(변호사)/ ○(상담원)	X(제도 시행 전)/ X	- 진술녹화 전 상담소에 연계됨. - 피해자 증인출석 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함. 진술조력인의 역할도 한 것으로 보임. - 의견서 외에 가족 탄원서 검토·제출.
6	○	○ / 확인 불가	○(남성 변호사) / ○	X(제도 시행 전)/ X	- 진술녹화 마친 후 상담소에 연계됨. - 피해자 증인 신청에 대한 문제제기
7	○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상담원)/ ○(상담원)	X(제도 시행 전)/ ○	- 진술녹화 전 상담소에 연계됨. - 진술녹화 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음.
8	○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상담원)	확인 불가/ X	- 증인출석 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민사 손해배상사건 무료법률구조신청. - 위증죄 피소 사건 무료법률구조신청.
9	○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상담원, 변호사) /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 신고 전에 상담소에 연계됨.
10	○	○ /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상담원)	X(제도 시 행 전)/ ○(상담원)	- 진술녹화 다음날 상담소에 연계됨. - 재판부가 상담원을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 상담원이 진술조력인(이자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 증언 시 참여하였음.

Ⅲ. 지원 사례에서 드러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

1.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관련

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³⁵⁾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³⁶⁾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³⁷⁾ 실무적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이 해바라기센터³⁸⁾에 신고를 할 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작성한다. 특별히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 검사가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순번에 따라 지정한다.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변호사 개인차가 극심함 - 피해자로서는 지정변경 신청의 방법이 사실상 유일

가장 큰 문제점은 변호사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어떤 변호사는 합의 시도를 몇 차례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도 하고([사례2]의 1심),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진술

33) 상담소에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 의료지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의견서 제출, 증인 출석, 재판 모니터링 등은 지면 관계상 따로 적지 않았다. 검토할 제도와 관련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유무, 진술조력인의 역할 수행 여부, 피해자국선변호사 변경신청이나 기타 부수적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신청 유무에 대하여만 정리하였다.

34)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다는 의미이다.

35)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제6항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참조

36)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5항

37)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38) 기존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기능은 현재 ‘해바라기센터’로 통합되어,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아동과 여성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녹화 속기록을 신청하지 않는 등 지원에 소극적이었다([사례3]).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상담소에 전화하여, 고등법원 공판검사가 자신에게 고압적으로 피고인 주장에 반박할 의견을 제출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만나야겠다, 피해자(자양동)가 변호사 사무실(안산)로 왔으면 좋겠다, 상담소에서 데리고 와 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2주간 하다가 결국 변호사가 상담소로 와서 피해자를 만난 사례가 있다. 피해자 변호사의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재 또는 피해자를 ‘유죄 입증’이라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도구화한 결과인데, ‘검사가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빨리 만나 서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사의 말이 일지에 몇 차례 기록되어 있었다([사례8]).

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피해자의 가족, 상담원과 함께 사건 전체를 다시 점검하여,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변호사 의견서 작성,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변호사도 있었다([사례5]). 이 사례에서는 상담소·피해자와 변호사 사이에 공판 내용과 이후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도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변호사가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증인신문 준비, 의견서 작성 내용 및 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상담소와 수시로 논의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7], [사례10]).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지원에 소극적일 때, 피해자로서는 검찰청에 변호사 지정변경신청³⁹⁾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기 어렵다.⁴⁰⁾ 그리고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검사가 임의로 배정하므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2]와 [사례3]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국선변호사 변경을 하였지만, 변경된 변호사와는 연락이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이하는 국선변호사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와 명부에서 삭제) 등에 그치고 있어,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의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절차 준수 필요

법률조력인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 결과나 기일 등을 통지할 의무규정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⁴¹⁾ 이는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정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2]와 [사례10]의 경우 각각 법원⁴²⁾과

39)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40) 만약 상담소에서 먼저 상담을 받는다면 어느 변호사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경찰 신고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므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검사의 지정에 따르게 된다.

41)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2013

42)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수사기관⁴³⁾의 통지가 문제되었다. [사례2]에서는 항소심 선고기일(2015. 2. 5.)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었으나, 변호사는 ‘자신도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 검사실이나 피고인 변호사와 소통해보고 상담원에게 연락을 준다고 한 내용이 상담기록에 남아 있다. 법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시정되었다. [사례10]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어느 법원에 기소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당시 기소 일시는 2014. 4. 3.), 이는 통지의무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문제였다.

그런데 [사례8]에서는 피해자에게 증인 소환장 전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연락하지 않고 증인신문 하루 전날에야 검사가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전화하는 일이 있었다. 소환일로부터 증인신문 예정일까지 약 1달의 간격이 있었음에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지원절차신청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미리 증인소환사실을 전달 받지 못할 경우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증인신문 기일 등은 특히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지되어야 한다.

3) 연락이 잘 되지 않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현실적인 문제점은 변호사와 연락이 어렵다는 점이다([사례1], [사례2], [사례3]).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상담소로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일이 생긴다. 재판부가 변경되었는데 탄원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피고인측이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사례3]) 까지, 의논할 일은 많으나 의논하기가 쉽지 않다.

4) 상담소와의 협업에 소극적인 경우 상담소의 지원에 제약

한편, 상담소로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상담소로서도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상담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지원의 내용, 원활함이 크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3)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3.]

게 달라지는 것 같다. 기일변경만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법원은 피해자변호사가 선임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피해자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는데,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상담소에 신속히 알리지 않는다면 상담소로서는 기일변경사실을 즉시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사례1). [사례1]에서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고 합의를 요구하자 피해자, 피해자의 부와 상담소가 논의한 결과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도 그렇게 알렸는데, 약 20일쯤 지나서 피해자의 부가 상담소에 ‘오늘 피고인과 합의하기로 했고, 피해자국선변호사와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합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상담소로부터 충분히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버린 것이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상담소와의 협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으로 보인다.

2. 성폭력전담조사제도 관련 문제점

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

성폭력전담조사제는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하여 먼저 적용되었는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제고(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및 진술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⁴⁴⁾ 현재는 모든 성폭력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각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한다.⁴⁵⁾

나. 사례 검토

검토한 사례들의 절반은 관할 경찰서 성폭력수사대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담당 검사가 성폭력전담검사였는지는 상담소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실무에서는 성폭력전담수사관인지 그 자체보다도, 담당 형사와 검사의 장애여성과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담소와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다.

1) 지적장애여성의 진술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축소되어 처리

44) 이미정,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4호, 2009

45)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예를 들어, 지적장애여성의 진술은 진술자의 이해와 의도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⁴⁶⁾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진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4항 단서는,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지적장애여성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하지 않아 피해가 축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사례3]에서는 기소된 가해자 외의 가해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고는 하나,⁴⁷⁾ 담당 형사가 진술분석가 의견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안에서는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극히 일부인 3명(자백한 사람들)만 기소되었는데, 소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탓으로 보인다. [사례6]의 사건B도 비슷했다. 피해자 진술에서는 약 20일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씩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미수 1회, 기수 1회만이 공소 제기되었다. 검사는 추가 조사를 하여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진행되었다.

2) 임상심리사의 검사 결과 불신

임상심리사의 검사 결과를 불신하는 태도도 문제다. [사례6]의 사건A에서는 경찰 수사 당시 이미 심리검사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재차 심리검사를 요청하였다. 의사의 소견서가 아닌 임상심리사의 검사 결과라는 이유였다.

3) 불필요한 증인 소환

지적장애여성을 불필요하게 증인으로 소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6]의 사건B 검사는 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증인소환하였다. 검사는 법원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여 소환하였다고 하였고, 상담원이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한 기록이 있다. 피해자변호사가 증인지원관실과 소통한 후 불추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진술녹화 CD만 재생한 후 변론종결하였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4) 장애 및 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

46)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284~285면.

47) 피해가 있었다는 아파트 옥상이 기와 지붕형이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머물 수 없다, 가해자의 일부는 피해자와 따로 접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

[사례4]의 수사 검사는 심리검사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세의 여성이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다.

5) 수사기관과 상담소가 상호보완적으로 피해자지원을 한 사례

반면 담당 형사나 검사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상호보완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사례4]의 경우 담당 형사와는 협조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녹화 때 말하지 못한 추가 피해 사실을 상담원에게 상담하였고, 상담원이 담당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담당 형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담당 형사는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가해자를 석방하였다는 사실을 상담소에 알려오기도 했다. 상담소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발기불능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 받을 것을 경찰에 조언하기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협업이 이루어졌고, 검찰 송치 후에도 담당 형사가 상담소에 결과를 알려왔다. 위 [사례4]는 피해자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형사와 상담소 사이에 소통이 잘 되어서 사건 진행도 원활하였다. [사례5]에서도 담당 형사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 담당 형사는 예전에 상담소와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었고, ‘공감에 연계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등급을 다시 받는 문제에 대하여 상담소와 의논하고, 수사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였다. [사례7]의 공판검사도 상담소와 소통이 잘된 것처럼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상담소와 논의하거나 피해자 모친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증인지원 여부 등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상담소 의견을 반영하였다.

6) 개인간의 편차가 큼

성폭력수사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국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관 개인의 인식과 능력에 따라 그 지원의 질이 달라진다. 수사기관이 협조적인 경우 상담소는 수사와 재판 일정을 미리 통지받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이 장애여성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수사 자체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사례3], [사례6]) 부실 수사는 처벌의 공백으로 이어지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수사기관 개인의 선의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이다. 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⁴⁸⁾ 교육만으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48)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3항.

지는 의문이 있다.

3.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형식적 적용

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진술할 때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고, 이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⁴⁹⁾ 그런데 이때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⁵⁰⁾

나.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동석시키는 문제

검토한 사례들에서는 신청한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이 거부된 경우는 없었고, 많은 사례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켰다 하더라도, 의사소통, 장애인지 능력, 피해자와의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사과정에 동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문제다.

[사례2], [사례5], [사례6]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다. [사례2]는 공판과정이었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진술녹화할 때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호사가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사례6]에서는 원스톱 경찰 진술에서 변호사가 유일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는데, 남성 변호사여서 성폭력 당시 상황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불편해하였다. 피해자가 ‘여자 얼굴 그려져 있는 가면 쓰라고 하면 안 되느냐, 마네킹 가발 쓰면 안 되느냐’고 말한 사실이 속기록에 드러난다. 이 사례에서 경찰은 ‘변호사님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분이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나랑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4]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최초 진술녹화 시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의 모가 동석하였다. 그런데 그후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최초 진술녹화 때는 엄마가 같이

49)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50)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

있어 말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추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상담원이 공판에서 위 녹화CD를 시청한 후 작성한 상담일지를 보면, 최초 진술녹화 때 피해자의 모가 뒤에서 계속 울고 있고, 피해자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진술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있다.

위와 같이 남성변호사, 어머니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불편해하고 진술을 제대로 못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다른 사람을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4. 진술조력인 제도 관련 문제점

가. 제도의 도입 취지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과 장애인과 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조사과정과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조하며 2차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⁵¹⁾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⁵²⁾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고,⁵³⁾ 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⁵⁴⁾ 성폭력처벌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 12. 19.부터 시행되었다.

나. 사례 검토

지적장애 피해 여성에게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특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례10]에서는 진술녹화를 하면서 긴장을 풀기 위한 사전조사와 실질적인 조사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산만한 환경과 태도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진술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았고,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자가 충분히 설

51) 정현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1호, 2012

52) 사법절차 과정,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실습과정이 포함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5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

54)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명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는 기록이 있다. 진술녹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조사자가 질문을 잘 구성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진술이 제대로 진술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면 피해가 축소되어 처리된다는 점에서도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례5]의 피해자는 진술 녹화 시 낱자개념이 미약하고 향문과 성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사 당시에는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전이어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사례의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준강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2심에서 장애인준강제추행으로 공소장변경 후 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검토한 10개의 사례 중 [사례2],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10]은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전에 경찰 진술녹화를 하여 수사과정에서는 진술조력인이 지원될 수 없었다. 그러나 공판절차는 대부분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 후에 진행되었다.

1) 제도의 미활용

일단 검토한 사례 중에서 진술조력인 제도가 활용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아래의 사례들은 기록 상으로도 진술조력인의 지원이 절실했음에도 지원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사례1]에서 진술녹화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담원은 ‘피해자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본인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겁을 먹고 생략해서 말하거나 조사자가 알아듣지 못하여 다시 질문하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사례2]에서는 피해자A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한글을 몰라서 선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발화하는 것도 불편해보였으며, 언어적으로 소통하기가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상담원의 모니터링 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례4]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2차 진술녹화 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였는데, 나중에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따로 물어보니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상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여러 피해에 대한 질문이 섞여있어서 진술 자체가 좀 산만하고 2시간 넘는 시간에 비해서 중복된 내용이 많았다는 상담원 의견이 있었다. 진술조력인이 동석하거나 조사관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표현을 골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사례8]에서는 피해자가 공판에서 증언할 때 진술조력인이 지원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증죄로 고발하였다. 지적장애 피해자가 증인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증언거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한편, 공판 증인 신문에 진술조력인의 지원이 있었던 사례는 [사례7]과 [사례10] 뿐이었다. [사례7]에서 진술조력인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2) 진술조력인 양성 및 활동 내용과 역량 점검 필요

위의 검토 사례 중 수사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한 예는 확인된 바 없었다. 일부의 사례가 제도시행 전에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진술조력인의 수급현황과 기록에 나타난 원활하지 못한 조사과정을 고려할 때 진술조력인의 지원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⁵⁾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초 1기 진술조력인단 48명을 양성한 후에는 연간 10명 정도를 배출하여 2016년 1월 현재 진술조력인은 총 70명이고, 법무부의 계획대로 2016년 11월까지 10명이 추가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활동하는 진술조력인은 총 80명 수준이기 때문이다.⁵⁶⁾ 따라서 우선은 진술조력인을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과제일 수 있다.

그리고 진술조력인의 활동 내용을 점검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연 1회 이상)⁵⁷⁾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시행하고 진술조력인의 관리·감독 등⁵⁸⁾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 신청에 대한 고지와 필수적 참여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재량으로 결정한다.⁵⁹⁾ 다만,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실제로 고지가 잘 되고 있는지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조력인에 대한 고지 및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진술조력인 양성과 맞물려 있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종국에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부

55)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인 2014년 초 진술조력인단 1기 48명이 배출되었고, 그 중 13명이 서울에 배치되었다. 2014. 1. 22.자 국제신문, “성폭력피해자 진술조력인 부산 단 2명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103.22005210422>)

56) 법무부, “2016. 11.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확대 사업내역서”,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57)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58)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59)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터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선정된 진술조력인이 지속적인 지원 필요

수사과정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⁶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 전에 시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외국어 통역사와 같이 수사·재판기관이 필요할 때에만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원을 서로 분절시키고, 조사 및 심문을 제외하고는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 피해자의 특성이 한 번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⁶¹⁾ 이런 점에서 [사례10]은 의미가 있었다. 규정 상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는데, [사례10]에서 재판부는 형식적인 자격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피해자를 지원하여 오던 상담원을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 의사소통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5. 형사사법절차에서 상담소의 역할 및 상담소와의 협업의 필요성

이 글의 검토 대상이 상담소가 지원한 성폭력사례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상담소는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형사사법절차에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담소는 지속적인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진술녹화나 증인출석 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며,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소통하면서 장애여성의 특성이나 상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는 일상적인 활동이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때 피해자에게 변호사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거나([사례2], [사례3]), 피고인과의 합의나 기타 형사 절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사례8]), 피해자가 변호사와 즉시 소통할 수 없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연락하여 절차를 문의하기 어려워할 때 중간에서 소통을 도와주기도 한다([사례4]). 정리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국선변호사, 피해자와 수사기관·재판기관 사이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각각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며,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60)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61)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69호, 2013. 6., 82면

이 과정에서 상담소는, 앞서 살펴 본 다양한 절차 관계자들 개인의 편차에 따른 피해자 지원 내용의 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자칫 분절적일 수 있는 지원체계 내에서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본다. 성폭력 사건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처벌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도구화한다면 이 모든 절차가 무슨 소용인가? 형사사법절차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경험과 관점이 형사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덧붙여서 본래 검토의 범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오랫동안 시정하려 했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정보를 적시에,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사례9]에서 담당 형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피해자의 모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었으므로 법정 대리인, 변호사 또는 그 외 지원자도 사건 진행 상황을 동시에 통지받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같은 사례에서 검찰은 형사조정을 한다면서 피해자를 소환하였는데, 피해자의 모는 상담소에 ‘형사조정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꼭 가야 하느냐, 고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상담하였다. 이후 상담소에서 피해자변호사와 연락하여, 피해자변호사로 하여금 검사실에 피해자 측 의사(조정, 합의 의사 없음)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의 의미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를 고소 취하 유도로 이해하였다면 문제가 있다.

또한 [사례8]에서는 1심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출석하여 재차 소환한 뒤 비로소 피해자가 출석한 사실이 있었는데, 불출석 당시 피해자 본인이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불출석 사유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잘 몰라서 출석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에서 증인소환 시,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전달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나중에 위증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상담소와 통화한 기록을 보면, 경찰서에서 편지를 받았다는 것만 인지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위증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2주 후에도 송치 관련하여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고도 했다.

상당소에 절차에 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상당소가 기소 여부나 기일변경 여부를 즉시 통지 받지 못하고 수차례 담당 형사,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서야 알게 되었던 점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⁶²⁾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⁶³⁾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시
 2. 검사: 사건 처분 시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4.]

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례6]에서 사건A의 2심 진행 중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모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재판부에 이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대법원 판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사건B의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었으나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A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재판에서 진술녹화CD를 재생하였다. 이때 피해자 인적사항의 보호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례7]에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모에게도 장애(지적장애1급)가 있었고, 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판 증언 시 신뢰관계인은 동석하였으나(피해자의 이모),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상담일지를 보면, 피해자의 모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검사와 재판부 그리고 변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증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사안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지원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⁶⁴⁾ 상담소가 피해자의 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진술조력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는 직접 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진술조력인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IV. 나가며

상담소가 지원한 사례에서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전담수사관 제도,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럴듯한 제도적 외양과는 별개로, 어쩌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개개의 사건에서는 절차 자체보다 절차에 관여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변호사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내용과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의 열의와 능력의 편차, 그에 따른 피해자 지원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제도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보완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더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계자들의 협업이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의 관계자들이 상담소와의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6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야 할 것 같다. 상담소는 신뢰관계인으로서 수사나 재판에 동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특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장애여성이 형사사법절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 왔다. 이런 상담소의 지원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형사사법절차 관계자들 사이의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여 왔다고 본다. 형사사법절차의 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업할 때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취지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제 3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⁶⁵⁾

-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

김정혜(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1994년 성폭력처벌법⁶⁶⁾에 장애인준강간죄가 신설된 이래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기소와 재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건이 처벌되지 않은 채 남겨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재판이 피해자의 저항에만 집중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저항과 더불어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다. 피해자의 일종의 “의사 피고인(pseudo-defendant)”^{화67)}로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성폭력의 책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려지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경향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처벌법의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법적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 여부의 판단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원의 판단 근거와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판결은 1998.1.1.~2013.12.31. 기간에 1심이 선고된 사건의 형사판결문 740건, 2014.1.1. 이후 선고된 판결문 44건이다.⁶⁸⁾

65) 이 글은 학술지 투고 예정인 초고입니다. 인용이 필요한 때에는 필자(wiccee@gmail.co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일부는 다음 논문을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66) 1994년 제정 당시 법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었으며 2016년 10월 현재의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하에서 모두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한다.

67) Morrison Torrey(1991), “When Will We Be Believed: Rape Myths and the Idea of a Fair Trial in Rape Prosecutions”, *UC Davis Law Review* 24, 1059면.

II.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이론은 법이 여성을 고결한(virtuous) 여성과 부도덕한(unvirtuous)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고결한 여성은 성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처럼 ‘모든 성관계가 금지된’ 여성이고 그렇기에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여성’이다. 이 집단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부도덕한 여성은 아내나 ‘매춘부(prostitutes)’처럼 이들에 대한 ‘어떠한 성관계도 금지되지 않은’ 여성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여성’에 속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⁶⁹⁾ 이러한 이분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는 아동, 청소년 간음죄,⁷⁰⁾ 아내에 대한 강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⁷¹⁾ 성매매 여성이 강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⁷²⁾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적장애여성은 낮은 지능을 이유로 아동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덧붙여져, 언제나 고결한 여성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장애여성은 한편으로 ‘무성적인(asexual)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과도하게 성적이거나(hypersexual) 무분별한 존재’로 분류된다.⁷³⁾ 아동과 같이 무성적 존재로 간주되는 장애여성은 성적 욕망도 없고, 성적 능력도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장애인의 일부의 손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를 비정상적 영역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68) 성폭력처벌법에 장애인준강간죄가 신설된 것은 1994년이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장애인준강간죄의 범위에 포함된 개정법은 1998.1.1.에서야 시행되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고 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판결문 분석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장애인준강간죄에 포섭된 시기를 기점으로 잡았다.

69) Sherene Razack(1994), "From Consent to Responsibility, from Pity to Respect", 895면; Catharine A. MacKinnon(1989), *Towards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75면.

70) 대개의 국가에서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자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71) 형법이 아내를 강간 객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2013년에야 아내간간을 범죄로 인정하였다. 아내간간에 대한 학계의 입장으로는 김일수, 서보혁(2007), 『새로쓴 형법각론』 제7판, 서울: 박영사, 160면; 권오걸(2009), 『형법각론: 이론·판례』, 서울: 형설출판사, 170면; 임웅(2013), 『형법각론』 제5정판, 파주: 법문사, 183면; 임석원(2014), "범죄성립의 관점에서 본 부부간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방향", 법조협회, 『법조』 제63권 제11호. 임석원(2014)는 배우자에게 성교요구권이 있고 이에 경미한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성기결합행위 요구권이 포함되므로 혼인 상태에 따라 아내간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72) 장임다혜(2009),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담론·전망』, 파주: 도서출판한울, 136~137면.

73) Kim Q. Hall(2011), "Reimagining Disability and Gender through Feminist Studies: An Introduction", Kim Q. Hall ed., *Feminist Disability Stud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4면.

태도를 반영한다. 장애여성의 성적 발달이나 욕망 등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장애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⁷⁴⁾ 장애여성이 무성적일 것이라는 가정으로 인하여 장애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는다. 성적 자율성의 부정은 동시에 장애여성이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라는 관념에 기반을 둔다. 적절한 성교육의 부재, 수동적인 성인식의 권장,⁷⁵⁾ 재생산의 통제는 장애여성이 성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본능적인 성적 관심이 무분별하게 발현되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다.⁷⁶⁾ 이러한 인식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장애여성의 과도한 섹슈얼리티에서 비롯된 통제 불가능한 사고로 치부된다.

반대로 장애여성이 무성적인 존재로 이해되면 성적 접근에 취약한 존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보호받을 자격은 취약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취약성의 원인은 장애인 개인의 손상(impairment)⁷⁷⁾으로 설명된다. 오로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성폭력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개인적 취약성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면, 법의 역할은 그저 일탈자로서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에 그친다. 처벌이 장애인의 손상을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상을 갖고 있는 한 계속해서 성폭력에 취약하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를 사회적인 구성물로 이해하면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때문이 아니라, 손상을 취약성을 전환하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장애여성은 성폭력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⁷⁸⁾ 그 사회적 조건 가운데에 법이 자리한다. 장애여성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법은 장애여성의 손상을 성폭력에 대한 취약성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기반이 된다.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장애여성 성폭력이 처벌된다는 예측가능성은 약화되고, 법의 예방효과도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효과는 성폭력에 대한 장애여성의 취약성을 강화한다. 장애여성 중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를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태도는 장애여성의 성적 자율성 대신 성적 보호를 선

74) 이은미(2005),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제1호, 106면; 이해경, 김혜원(2009), “교사들이 지각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성교육 요구와 성행동 경험: 초,중,고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26면.

75) 권향임, 한연숙(2005), “생활시설 장애인의 성실태와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2권 제1호, 96면.

76) Lesley Chenoweth(1996), “Violence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ilence and Paradox”, *Violence Against Women* 2(4), 405면.

77)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기존에 의료적 모델이 장애로 보았던 개인의 기능적 제약을 ‘손상’이라고 부르고, 손상이 언제나 ‘장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78) Sherene Razack(1994), 위의 논문, 903면.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적 자율성과 성적 보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장애여성의 이분법은 성폭력 범죄의 재판에서 피해 인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장애여성은 ‘무성적인 여성’으로 보이는 데 성공할수록 피해자로 인정되기 쉽고,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보일수록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때문에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입증하려는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무성적인 여성으로 보이게 하고자 시도하곤 한다. 이분법 하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율성을 드러내면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를 무성적인, 취약한 존재로 재현하는 편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장애여성의 이분법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장애여성이 무성적 여성으로서 피해를 인정받게 된다면 이분법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고, 무성적 여성이 되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곧바로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 즉 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성관계를 스스로 선택한, 또는 성을 ‘거래’한 여성의 범주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법 위에서 무성적 여성의 이미지만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결국 장애여성의 이분법은 해체되어야 하며 이분법 가운데의 어디쯤에 존재하는, 성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장애여성이 발견되어야 한다. 장애여성을 무성화하고 성적 자율성을 부정하게 되면 성폭력의 식별과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성적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의 예방, 성폭력 피해의 인정, 적절한 피해 구제 조치는 장애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토대이다.⁷⁹⁾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의 증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Ⅲ.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 체계

형법은 성폭력을 강간(§297), 유사강간(§297의2), 강제추행(§298)으로 구분하여 법정형을 다르게 하고 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공통적으로 행위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한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폭력이 성립하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한 죄(§302),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거나 피구금자를 감호하는 자가 피구금자를 간음한 죄(§30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한 죄(§305) 등 미성년자나 보호, 감

79) Janine Benedet and Isabel Grant(2014), “Sexual Assault and the Meaning of Power and Authority for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Feminist Legal Studies* 22(2), 136면.

독의 대상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 추행을 저질렀어야 한다.

장애인이 피해자인 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간음, 추행이 범죄가 되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이 피해자인 때에는 연령이나 관계를 막론하고 범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한 장애인준강간·준강제추행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한 장애인위계·위력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 때이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이면서 만 13세~18세의 아동·청소년인 때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청소년을 간음, 추행하거나 장애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추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8)

이상과 같이 우리 법에서 성폭력 범죄⁸⁰⁾는 피해자의 장애여부, 나이, 행위수단, 성적 삽입 여부 및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해당 조항들은 객체의 범위를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IV.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소와 문제점

1.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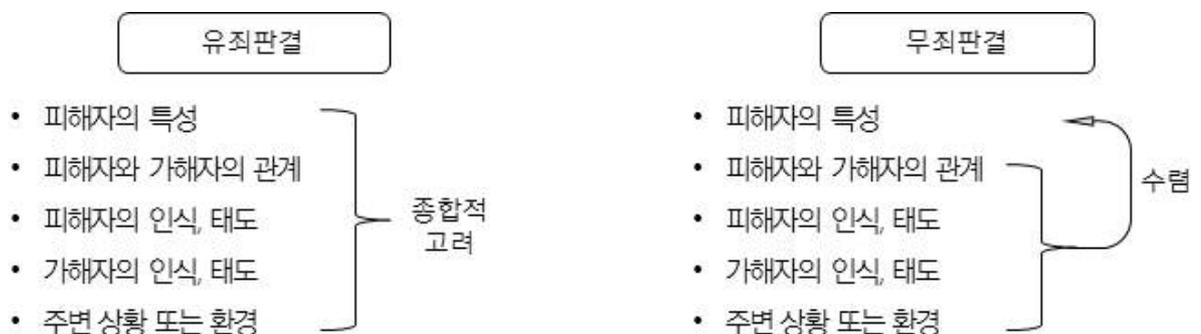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 장애인준강간죄, 장애아동·청소년간음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강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② 간음하였어야 하고, ③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또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어야 한다. 적용 법조에 따라 객체의 범위나 행위수단은 서로 다르지만, 이와 같은 구성요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이다. 강간죄가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간음할 것을 요한다면, 다른 범죄에서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80)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 범죄’는 간음, 추행뿐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등 성풍속에 관한 죄, 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 유인과 관련된 범죄 등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로 간음,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지칭할 것이다. IV장 이하에서는 간음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수 없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이를 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간음과 더불어 피해자의 장애와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이 범죄 성립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심리하는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에서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된 판단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특성,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③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④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⑤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이 그것이다.⁸¹⁾ 첫째, 피해자의 특성으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심리적 특성, 성에 대한 이해도 등을,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신뢰 또는 의존 관계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 등을 살핀다. 셋째,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에서는 성폭력 전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성폭력 당시 저항 또는 거부 표현 여부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넷째,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에서는 성폭력 전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성폭력 당시의 행위 방법, 성관계를 은폐하려는 태도 여부 및 내용 등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 요소로서 범행 장소 등의 특성과 더불어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도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에서는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유죄 판결과 무죄판결에서는 위의 5가지 요소들의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유죄 판결에서는 5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5>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판단 요소 비교

81) 5가지 요소의 도출은 김정혜(2015), 위의 논문, 163~165면.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특성 중에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성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다른 요소들은 판결문에 잘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장애 정도 및 성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주변적 자료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행위수단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피해자의 장애가 매우 중할 때라야 '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상대방을 두려워하였거나 상대방의 간음 시도에 싫다는 표현을 하였을 경우, 유죄 판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의 하나로 판단한다. 반면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태도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본다. 거부하였다는 것은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장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또 다른 행위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성폭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려는 법관의 성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한 태도는 한편으로 성폭력 관련법 체계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구분된 체계를 갖고 있다. 비장애 성인에 대한 간음은 업무상위력간음이나 준강간 등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폭행과 협박을 이용한 강간만이 범죄이다. 이때 폭행, 협박은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를 것이라는 전제 위에 있다. 그러므로 저항이 있고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만 범죄로서의 강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 이외의 수단이나 사유로도 성폭력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양분된 법체계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성에 대한 이해도에 판단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폭행,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인지능력 부족 또는 성에 대한 무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무죄 판결에서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오로지 장애의 정도 및 성에 대한 이해도에 좌우된다는 논리로 비약한다. 피해자의 특성 외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태도는,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 저항 능력이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 사물변별이 가능하고 성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하면 저항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피해자의 거부 표현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능력 있음과 '저항할 수 있었음'을 한꺼번에 이끌어내는 논리로 이어진다. 피해자의 거부로부터 '성관계를 원치 않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능력을 입증하는 논리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 장애인 성폭력 범

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려 하는 법 해석 태도에서 비롯된다. 비장애 성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법 또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려 하는 해석론에 기여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범행의 목격자나 증거물이 적은 편인 성폭력 범죄에서는 범죄의 입증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판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된 요소는 진술 내용의 ① 일관성, ② 구체성 및 명확성, ③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④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⑤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⑥ 무고 가능성의 6가지 범주이다.⁸²⁾ 각 요소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비일관된 진술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범행 방법, 내용, 당시 정황 등 적어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는 진술자가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세부적 묘사가 있거나,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의 묘사가 있거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드러날 때에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전체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넷째,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진술 내용이 피해자 진술 외의 관련 증거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제3자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기억이 변형되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암시를 받은 진술이나 혼동에 의한 진술을 가려내려는 것이다. 여섯째,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⁸³⁾

성폭력에 대한 불신과 성폭력 피해자 비난, 목격자나 증거물이 거의 없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심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세하게 검토된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면 때에는 허위 진술 가능성에 더하여 지적 능력으로 인한 기억력 및 의사소통 능력의 제약, 외부의 영향 및 기억 변형 등이 문제된다.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유죄의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가 요구되지만 비지적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에 있어 지적

82) 6가지 요소의 도출은 김정혜(2015), 위의 논문, 228~247면.

83) 김정혜(2015), 위의 논문, 247면.

장애의 특성을 살피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도록 한편의 장애 특성 고려 또는 피해자 보호와 다른 한편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적절히 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추적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판단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자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조차 장애여성을 ‘무성적 여성’과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제된 사건이 피해자에게 최초의 성경험일 때, 그리고 다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없을 때 피해자는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하다. 순결한 존재로서의 ‘무성적인 여성’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는다. 반면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신뢰 받기가 더 어렵다. 지적 능력이 낮으면 과거의 다른 경험과의 혼동이 우려되고,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비장애 성인 여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의심처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을 무고할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러한 의심은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중 상당 부분을 처벌하지 못한 채 남겨둔다. 지적장애여성은 여러 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한 사람으로부터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는데 과거의 피해 경험이 있을 때 피해 진술이 불신된다면 최초 피해 외에는 범죄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범행의 반복을 수월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지적장애여성의 이분법 하에서 피해여성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나 성적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적장애여성은 ‘무성적인 여성’에서 쉽게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분법 하에서는 지적장애여성이 성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대표 조항인 장애인준강간죄가 가정하는 전형적인 성폭력은 ‘성에 대해 무지하고 무력하며 무성적인 장애여성이 성적 접촉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적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여성은 완전히 무지하고 무력하였든가, 아니면 비장애여성에게 요구되는 만큼 저항하였어야 한다.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sexual history)이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되면, 지적장애여성은 피해 사실을 꾸며낼 능력이 없는 여성과 꾸며낼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구분되기보다는 ‘꾸며낼 능력이 없는 여성’과 ‘거짓진술을 하는 여성’으로 양분되기 쉽다. 과거의 성경험과 같은 피해자의 성적 이력 정보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경우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⁸⁴⁾는 기준과 맞물려,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두려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음식, 용돈이나 차를 얻어 타는 정도의 대가로 성관계를 허락하는 장애여성, 별다른 저항도 없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장애여성, 성관계를 좋아하며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많은, 남성에게 관심이 많은 장애여성으로 재현되면, ‘정신연령은 아이와 같지만 성적 발달은 성인의 수준이어서 과도한 성욕을 드러내고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의 범주로 분류된다. 이때 피해자의 두려움과 원치 않음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된다.⁸⁵⁾

법원은 상식, 통념, 경험칙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법에 기초한 성폭력의 전형적 상을 법적 판단에 반영한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가 요구되는데 이때 합리적 의심은 법관 개인이 아닌 일반인의 객관적 의심을 말하는 것이고,⁸⁶⁾ 실제로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에 대한 법조인의 통념은 일반인의 상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⁸⁷⁾ 판결문에 제시되는 경험칙의 내용 역시 그러하다.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경험칙상 합리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일관성, 구체성 및 명확성의 결여, 경험칙상 합리성 없음,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음, 혼동 가능성, 무고 가능성 등은 일견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능력의 한계 또는 거짓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요청되는 증거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사실의 ‘확인’만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이라는 과정이 개입된다.⁸⁸⁾ 그런데 해석자로서 법원이 갖고 있는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정한 전형적 상이 실제 피해 상황과 동떨어진 것일 때 법원은 일관성이나 구체성, 경험칙상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혼동 가능성, 무고 가능성 등 각 요소 모두에서 피해자를 의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무섭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지적장애여성의 ‘비일관된’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경험,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조건, 피해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서로 양립 가능하고 일관된 진술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제3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상

84) 대법원 2012.5.10, 2011도16413 판결.

85)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만난 사건 유형에서 이와 같은 불신은 더 자주 발견된다. 지적장애여성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만나 간음, 추행이 발생한 사건은 무죄율이 매우 높다. 김정혜(2015), 위의 논문, 137면.

86) 권영법(2015),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과 입증에 관한 새로운 검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153면.

87) 김지혜(2007),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서울: 푸른사상사.

88) 양현아(2006),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70면.

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두려웠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무섭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다. 하지만 법관이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두려움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릴 것이다.

지적장애 피해자가 진술 능력이 부족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였는데도 진술 내용이 법관의 경험칙에 어긋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들을 각각 검토한 결과 신빙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관의 시각이 신빙성 판단 요소들 각각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게 되기도 한다. 결국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관의 시각이나 이해의 정도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V.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특성

이하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인정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을 구성하는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를 수월하게 하는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소들로부터 성폭력이라는 성격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반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⁸⁹⁾

1. 낮은 지적 능력의 이용

법이 가정하는 전형적인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유형은, 중한 지적장애로 인해 성관계 여부나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중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대방의 행위의 성적 본질을 판단하지 못한다. 때문에 간음에 이르기 위해 별다른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거부나 저항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할 때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진술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간음이 입증될 수 있으면 유죄가 선

89) 이하의 내용은 김정혜(2015), 위의 논문, 286~306면을 발췌, 수정하였다.

고되는 경향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중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성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범행을 목격하거나 피해의 흔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범행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피해자 ○○○(여, 20세)는 지능지수 45 이하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0.5.28. 16:40경 서울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아파트 놀이터 앞 주차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화물차 뒤 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장애인주간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⁹⁰⁾

범행은 마치 일상생활의 일부인 듯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위 사례에서처럼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하거나, 용돈을 주거나, 집이나 애완동물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거나, 휴대폰을 사준다고 하는 등 지적장애여성의 관심을 끌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지 약 1주일 후에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특별한 거부 없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의 지급 약속 등도 없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요구하는 성관계에 대하여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가 같은 또래 청소년으로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고, 성관계 당시에도 웃기만 할 뿐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의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성적 관념을 가진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청소년강제추행, 장애인주간간 등, 징역 2년6월 선고)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으로 데려간 후 강제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다리를 오므리는 정도의 소극적인 거부 의사만 표시할 뿐” 적극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추행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고, 약 1주일 뒤 위 인용 부분과 같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도망치듯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법원은 청소년

90) 이하의 인용은 모두 판결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년인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을 표하거나 대가를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받아들인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여 호의를 베풀거나 아는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성적 접근을 할 때, 비장애 성인이 라면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호의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적장애인은 그와 같은 경계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낯선 사람이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금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유인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면에서 지적장애는 그 자체로서 저항의 어려움을 내포한다.

2. 가벼운 강제력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사리분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의 정도는 매우 중한 수준에서부터 '경계선'⁹¹⁾ 범주라고 불리는 지능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비슷한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 사이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지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는 단지 성관계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여성만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인이나 성적 접촉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가해자는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인식은 없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서 가해자의 성적 접근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저항을 억압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라도 사용되는 강제력의 정도는 비장애여성에 대한 것보다 더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2009.2.13. 14:30경 ○○동 소재 피해자 ○○○(여, 18세)의 집 앞 노상에서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는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집에 가야 하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심신미약자간음, 징역 3년 선고)

강한 강제력이나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에서 피해자는 단지 싫다고 말하거나 옷을 벗기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있거나 우는 정도의 저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대하여 가해자

91) 지능이 지적장애 3급보다 높고 '정상' 범주보다는 낮은 것을 말한다. 지능지수 71~84에 해당된다.

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옷을 억지로 벗기거나, 몸으로 누르는 정도의 강제력만으로 간음에 이른다. 지적장애여성이 타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데 익숙하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기보다는 한두 번 거부 표현을 하였다가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항을 단념하게 된다. 이는 미약한 듯 보이지만 지적장애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저항일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그곳을 도망쳐 나와 모텔 프런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까요”라는 질문에 “만약에 제가 나간다면 오빠가 못나가게 때리거나 문을 잠글까봐요”라고 진술하였다. (장애인준강간, 사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나왔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다. 유죄가 인정된 범행 당일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 위치 추적이 된다는 이유로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가 “너무 아프니 하지 마라”고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욕실로 밀어 넣어 씻도록 하고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그쳤다. 모텔에서 도망치거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때리거나 문을 잠글지도 몰라서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가해자가 때리거나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맞거나 감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으로 저항의 정도는 약화된다.

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지적장애여성의 거부 표현은 가해자에게는 너무 가벼운 것이어서, 간음을 계속하는 데 유의미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때 피해자의 저항은 억압된다기보다는 무시되는 데 가깝다. 때문에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장애인준강간죄가 아닌 장애인위력간음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의 거부 표현을 무시하고 간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위력’의 존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성관계를 가해자가 감행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대신 심리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지적장애여성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시도한다. 수습 차례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다.

“저는 잠만 자려고 갔어요. 섹스 그런 건 안 하고 잠만 자려고 갔어요. 그 오빠가 하자고 하니깐 맨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었어요.” “계속 하자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욕 먹는 게 싫어서 계속 하자고 하니까 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이 계속 하자고 할 때) 저는 그냥 싫은 기분도 아니었고, 싫어해야 하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 싫은 기분도 안 들었고 보통 정도 느낌” (장애인준강간, 무죄 선고)

순응을 독려하는 장애여성 교육의 결과, 지적장애여성은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가해자의 집요한 요구의 결과로 성관계에 이르렀을 때, 가해자의 강제력이나 피해자의 저항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해자 또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의 합의란 여성의 동의, 상호적 합의가 아니라 단지 여성의 저항 없음, 혹은 사력을 다한 저항이 아님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가벼운 거부 표현만을 하다가 거부를 중단하였거나, 집요한 요구에 못이겨 성관계를 묵인하였을 때, 가해자는 이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고자 한다. 남성중심적인 이성애 섹슈얼리티 각본에서 성관계는 ‘남성이 하는 것’이고 여성은 성관계의 대상이자 장소가 될 뿐이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남성에게 중요하지 않다. 성관계에서 폭력성이 폭력이 아니라 성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수인 가능하다고 보는 관념 하에서는, 거부의 무시, ‘다소 거친’ 행동, 집요한 요구는 성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성적 쾌락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 타인을 침해하는 폭력이 아닌 것이다.

3. 폭력이 아닌 성관계라는 인식의 유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의 부재는 피해자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지적장애여성은 상호적인 성관계가 무엇인지, 대등한 성적 주체로서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 성폭력을 침해이자 폭력으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하고 비난 가능하며 거부해도 된다는 인식, 사회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랑이란 성기를 빨아주고,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고인과 사랑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나 관념이 없거나 희박하여 성적자기결정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징역 4년 선고)

가해자는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구를 차에 태워 추행하였다. 가해자는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구강성교와 성기 삽입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행동을 정상화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사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성관계가 아빠라고 불리는 동거남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고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등 성폭력과 친밀감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성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오빠라고 불리는 다른 남자와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반복하며 성관계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충족의 도구가 되고 있고 (...) (장애인준강간, 미성년자유인, 징역 3년6월 선고)

위 사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간음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사실혼 아내와 동거 중인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만 집에서 데리고 나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다. 간음은 피해자가 14세 때부터 약 4년 간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친밀성과 동일시하였다. 또한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반복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분리된 지적장애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는 자신을 보호해주며 갖고 싶은 것을 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의붓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고, 반복된 간음으로 임신한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피해자는 공장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였다.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경험은,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곧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 규범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처럼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사랑이라고 믿도록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성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적장애여성의 태도는 보상을 통하여 강화된다. 착취적 관계는 정상화되며 성폭력은 반복되지만 지적장애여성은 그것을 피해로 인식하기 어렵다. 성적 피해를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이해하는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형성되면, 피해자에게 성적 자율성의 발현이란 기껏해야 상대방

의 성적 요구를 단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일 때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성을 이용하는 태도조차 성적 순응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지 성적 자율성의 실현이나 지적장애여성의 권력이 아니다.

피고인은 (...)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여, 3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 (...) 피해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 피해자에게 “5,000원을 줄 테니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장애인위계간음, 징역 5년 선고)

다수의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관계 이후 지적장애여성에게 돈을 준다. 지적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인식에 따른 일말의 양심적 가책에 대한 보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약속의 대가인 경우도 있고,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유인 또는 거래인 경우도 있다. 대가의 지급은 지적장애여성에게 성관계에 대한 보상이 된다. 돈을 지불하는 가해자들은, 지적장애여성이 성관계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한편 금전의 수수는 피해자를 경제적 판단 능력이 있는 거래의 일방으로 보이게 하고, 장애인 성폭력과 성매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그러나 비장애여성의 성매매에서도 여성의 ‘자발성’은 문제적인 개념인 바, 더욱이 ‘자발적으로 성을 거래하였다’는 지적장애여성의 인식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돈을 안 받고는 하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5천 원밖에 받지 않았음에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 (...) (장애인준강간, 무죄 선고)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기혼 상태이면서, 남편 외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성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비용⁹²⁾과 비교하여볼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매수’의 대가로 주었다는 5천 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이 착취적인 성적 요구를 ‘거래’로 혼동하도록 하고 피해여성의 저항을 어렵게 할 수단에 지나지 않는 금액에 불과하다. 여러 건의 판례에서 지적장애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몇천 원, 1~2만원 정도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5천 원밖에 받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돈을 받고 성관계에 순응해온 피해여성의 관행은 대가가 적더라도 ‘할 수

92)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의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은 82,251원이다. 변화순, 윤덕경, 이미정 외(2007),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팀, 62면.

없이' 성관계에 응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어쩔 수 없음'은 피해자의 자율적 자기결정이라기보다는 성적 강요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준다. 성'매수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음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과 비슷하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고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나아가 지적장애여성은 성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3.3.14. 03:00경 음악카페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손님인 신○○이 성매매를 요구하자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 15만 원이 포함된 술값 3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김○○으로 하여금 음악카페 부근에 있는 ○○ 모텔에 가서 신○○과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위 사례에서 지적장애 피해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원하여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장애인준강간 방조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장애인준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성매매로 보았다. 만일 성매매알선죄로 예비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아프다, 집에 가서 하자며 모텔에서 나와 도망쳐서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상황 판단력과 대처 능력, 의사표현능력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악카페에서 저녁 6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하루 9시간 야간 노동의 대가로 일당 1만원을 받고 일할 정도로 돈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취약한 위치에 있었으며, 본인이 '성매매'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의 당사자로 재현되었다. 숫자 개념, 금전에 대한 관념이나 협상력이 약한 지적장애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의 사소한 강요에도 제압되지만, 금원의 지급은 지적장애여성의 성적 이용을 '거래'와 '자발성'으로 둔갑시키고 피고인의 처벌 회피에 일조한다. 성폭력이 성매매의 외관을 갖게 되면, 가해자의 강제성이나 피해자의 저항의 어려움은 고려의 여지가 없게 된다.

장애여성이 무성적 존재를 벗어나 성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시도는 위협을 내포한다. 성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성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만,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됨으로써 비로소 성적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접근은 장애여성을 '쓸모없는 장애인'이 아니라 '성적 가치가 있는 여성'으로 인식하였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성적 접근은 장애여성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더라도 장애여성에게 성적 대

상화되는 ‘정상성’을 부여한다.⁹³⁾ 때문에 장애여성은 성희롱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과 무관하게 성적으로 이용되는 성폭력적 관계를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⁹⁴⁾ 이는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조건 중 일부가 된다.⁹⁵⁾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의 내면화를 통하여 지적장애여성은 쉽게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순응적 존재로 완성된다. 지적장애여성이 폭력적 성관계를 사랑받는 것 또는 거래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성적 착취를 가장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는 삽입 성관계의 의미도 알고, 성관계를 하면 임신한다는 것도,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안다. 성관계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거나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사회적 성규범도 안다. 이미 여러 번 성관계를 해보았고, 가해자가 콘돔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먹인 적이 있고, 성폭력으로 임신하고 출산한 적이 있고, 가해자가 성관계를 타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강요하였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가해자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많은 성관계를 해왔거나 성관계 후 돈도 받았던 지적장애여성은 폭력의 피해자, 무지하고 순결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탈적인 성적 존재로 낙인찍히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이란, 자신이 성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성적으로 이용되는 데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지적장애여성이 사후적으로 그것이 폭력적인 관계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과거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이,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지적장애인의 피암시성과 구분되지 못하면 지적장애여성은 마치 자율적으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뒤에 타인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성폭력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을 혼동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행위의 본질을 해석하는 문제는 다르다. 행위를 폭력으로 명명할 때라야 폭력적 성질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에 성폭력적 관계에 순응하였다고 하여 성폭력으로서의 행위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의존 및 권력 관계의 이용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또한 아는 사람에게 의하여

93) Janine Benedet and Isabel Grant(2014), 위의 논문, 152면.

94) 이은미(2005), 위의 논문, 109면.

95) 김정혜(2015), 위의 논문, 73~74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⁹⁶⁾ 동네 사람, 고용주나 직장 상사, 아버지나 친족, 친구, 선후배 등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적장애여성의 장애와 사회적 자원의 부족 상태를 이용하기가 더 수월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의존 관계, 더 나아가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여성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적장애여성이 가해자에 대하여 의존적인 위치에 있거나 가해자가 지적장애여성 또는 지적장애여성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하여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성관계를 위해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거나 적어진다. 이와 같은 위험은 법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바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위력간음죄를 두어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여성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인적 신뢰 관계의 이용’, ‘친족 관계인 사람의 범행’ 등은 형을 가중하는 요소이다.

피고인은 (...) 장애인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분별력이 낮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특성상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렵게 구한 직장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는 등 비교하거나, 회사에서 자른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얘기한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심신미약자간음, 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주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3여 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회 간음하였다. 반복되는 피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용불안이었다. 피해자는 해고될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따라갔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성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성추행 후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상담하여 공단 직원이 피고인에게 경고하기도 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친 것 또한 해고 위험 때문이었다.

96) 전국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실적에서는 채팅 상대자를 포함한 ‘아는 사람’의 비율이 최소한 74.9% 이상이었고,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판결을 분석한 김정혜(2015)에서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74.2%, 모르는 사람이 14.0%,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 11.8% 순이었다. 또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강간의 9.3%에 불과하였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2013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 장애권역”, 2014; 황정임, 윤덕경, 이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132~134면; 김정혜(2015), 위의 논문, 121면.

이에 대해[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경고만 한 점에 대해]⁹⁷⁾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피해자가 어렵게 구한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질까 염려도 되어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고(법정증언), ○○○ 대리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처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었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더 이상 ○○○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후 집에 갇혀 지내야 되는 것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 대리에게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부탁했었다고 진술한 바(증거기록 제271 쪽), 장애인인 피해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고 조치만 취하고 당시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경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심신미약자간음, 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

추행 후 몇 차례의 간음 피해가 반복된 이후에야 사건이 신고되었다. 부모가 딸의 성추행 피해를 수인하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만큼 지적장애여성의 사회 활동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5%에 지나지 않으며⁹⁸⁾ 취업자의 임금도 매우 낮다. 남녀 지적장애인은 주당 37시간을 근무하며 월평균 수입은 57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수입 153만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⁹⁹⁾ 성별임금격차를 감안하면 지적장애여성의 월평균 수입은 더 낮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상당히 낮은 취업률과 적은 소득은 지적장애여성의 경제 활동 기회가 제한적이고 경제적 자립도 어려움을 보여준다. 지적장애여성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기 어렵다면 고용 관계는 더 큰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 위협의 문제만은 아니다. 직장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해고되면 지적장애여성은 “집에 갇혀 지내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적장애여성의 타인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돌봄의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만이 아니라 지적장애가 없는 가족들조차도 가해자에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고민한다. 위 사례에서도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고용인 대 피고용인과 같은 상하 관계뿐 아니라 지적장애여성이 가해자에 대하여 의존적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의존성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거나 성적 접근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 일례로 분석 대상 판결 중에는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 지적장애여성이 이미 집을 나왔거나 집을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가해자가 모텔이나 자신의 집 등 잠자리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는

97) 인용 부분에서 대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가 가필한 것이다. 이하 같다.

9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25면.

99)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7면.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가족 간의 불화 등을 피해 집을 나온 상태이거나, 집에 돌아갔을 때 혼날 것이 두려워 쉽게 돌아가지 못한다. 피해자는 잠 잘 곳을 제공해주는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성관계를 회피하려 할 경우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성관계를 감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벗기고, 강제로, 내가 말 못할 정도로 공공 앓고. 오빠(남편)에게 문자로 보내고 삼촌(피고인)이 나한테 야한 짓한다고. 삼촌 몰래 문자로 써서 보내고’, ‘오빠 둘을 내보내고 삼촌이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문을 닫고 이불 깔아 주고 내가 잠자는 순간 그때부터 뒤를 만지고’, ‘관계를 갖기 싫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하자고 그랬어요. 난 안 한다고 말을 못 했죠. 나가라고 할까봐.’ (….) ‘나오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는 심정이었고. 내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나 맨날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고. 그런데 나올 생각도 못했지요.’ (….) (장애인준강간, 징역 3년6월 선고)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오갈 데 없는 피해자 일행을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일행들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었고, 그 중에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었는데 역시 지적장애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일행들을 집으로 데려갔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였고, 가해자의 성폭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일행도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일행들의 거처를 잃지 않기 위하여 성폭행을 수인하여야 했다.

남성의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성차별적 사회, 손상(impairment)이 장애(disability)로 직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장애차별적 사회일수록 장애여성의 인간다운 삶 혹은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돌봄과 의존이 요구된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작은 것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더욱 취약한 존재로 만든다. 돌봄은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낸다. 돌봄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내재된 권력 불균형은 억압의 잠재력을 수반한다. 돌봄이 자발적으로 제공될 때조차 위계는 형성된다. 돌봄의 방식과 범위를 선택할 실질적인 권한은 대개 돌봄 제공자에게 있기 때문이다.¹⁰⁰⁾ 때문에 돌봄에 수반되는 조건들을 거부할 때 장애인은 관계의 단절,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자원들까지도 포기하여야 하는 위협에 처한다.

장애여성의 의존 경험은 일시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시기 전체에 걸쳐 있다. 특

100) Anita Silvers(1995), “Reconciling Equality To Difference: Caring (F)or Just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ypatia* 10(1), 40~41면.

히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장애여성, 중증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 등은 삶의 전반에서 통제를 경험한다. 또한 장애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와 복지시설에서 순응적 태도를 학습한다.¹⁰¹⁾ 원치 않는 것에 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은 잘 행해지지 않는다. 때문에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 제공자의 성적 요구에도 다른 지시와 마찬가지로 순응하기 쉽고, 이와 같은 태도는 돌봄 관계 외의 인간관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통제의 일상화, 순응적 태도의 지지 경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의 박탈을 의미한다.¹⁰²⁾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 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누군가의 결정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사람이 성적 측면에서만은 자기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5. 사회적 고립의 이용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력 대신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보호망의 부재와 같이 지적장애여성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이용하는 성폭력의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적장애여성들은 어렸을 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활동의 가능성이 낮아 사회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적 주체로서 타인과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¹⁰³⁾ 지적장애여성의 주변인들은 지적장애여성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소통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보다는 지적장애여성의 활동을 통제하려고만 하거나 또는 방임한다. 지적장애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적고, 비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오랫동안 장애인은 격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왔고 장애는 비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 장애는 자신과 동떨어진 경험이며 가급적 겪지 않을수록 좋은 것일 뿐이다. 사회적 다수자의 지위에 있는 비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인 지적장애인과 교류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없다.

101) Lesley Chenoweth(1996), 위의 논문, 404면.

102) 광민영(2007),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74~81면.

103) 오혜경, 김정애(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학지사, 62면 이하; 광민영(2007), 위의 논문, 52면; 홍정련(2014),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41면; 문현주(2015),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75~76면.

피해자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상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부친은 청각장애가 있고, 모친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의 언니들은 피해자와 떨어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 게다가 피해자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고, 피해자의 집조차 인적이 많지 않은 곳에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면,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되며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경우 그 사람에게 쉽게 복종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을 사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기간에 걸쳐 총 10여 차례에 걸쳐 간음을 한 사실, (...) (장애인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위 사례는 고등학교 동창인 3명의 가해자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한 명이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사주거나 친절하게 대해 주는 피고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집에 놀러가 TV를 보고 있거나 자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을 찾아가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곤 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해자들은 ‘자신에게 잘 해주는 오빠들’로 인식되었다.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오는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손쉬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지적장애여성의 사회적 고립은 이렇듯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경험은 타인의 호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쉽게 유인되는 행동을 강화시키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립을 이용하여 작은 친절로 피해자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도록 한다. 친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지적장애여성의 욕구는 성폭력적 관계를 수인하도록 한다. 인간관계의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립보다는 폭력적 관계라도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고, 폭력이 관계의 본질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폭력이 교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가시적인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성관계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은 성폭력의 판단에 결정적이다. 지적장애여성이 주변 사람들이나 경찰에게 피해를 드러냈을 때, 피해를 지적 능력이 낮고 타인을 쉽게 따르는 지적장애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가해자의 행동의 범죄성은 희석된다. 신고한 피해자는 ‘친구도 없고 외로운 지적장애인과 놀아준 선의’를 배반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

는 장애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대등한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단지 시혜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장애차별적인 태도이면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을 반영한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이용한 범행에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인이나 저항의 포기 또는 가시적 저항의 부재,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가해자를 만나러 가는 등의 ‘자발적인’ 행동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징후로 본다면 이는 성관계를 매우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장애를 이용한 간음’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호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6. 보호망 부재의 이용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보호는 거의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다. 때문에 장애인이 어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지가 장애인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의 가족이 충분한 지지 자원이 될 수 있을 때,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능력 또한 점차로 향상될 수 있고 안전도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적장애여성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가 가족에 의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를 도와 신고하고 이후의 형사 절차의 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을 것으로 보일 때, 지적장애여성은 좀 더 쉬운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하여 범행이 일어나는 것은, 평소 지적장애여성이 보호망의 부재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판결문에 나타난 가해자 유형 중 ‘가족의 지인’ 유형은 지적장애여성의 보호망 부재를 이용한 범행의 사례를 좀 더 잘 보여준다. 통상 피해자의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될 경우, 범행이 가족에게 발각되었을 때 가해자가 발견되기 쉬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범행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에는 반대가 된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장애가 있는 때에는 오히려 가족의 장애를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피해자들의 부모나 남동생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인보다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 ○○○이 수시로 피해자들과 함께 자도록 내버려 두는 등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은 피해자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대신하여 회초리를 들고 피해자들을 혼내곤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을 무서워하였다.(장애인위력간음, 장애인위력추행 등, 징역 8년 선고)

위 사례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친해지게 되어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으로 찾아가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거나, 지속되는 성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자고 있자 주방의 칼로 잠금장치를 풀고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간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친한 사이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그 자녀인 자매를 번갈아가며 수차례에 걸쳐 간음, 추행하던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가족이 모두 장애가 있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험 연구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보호망의 부족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청소년들 중 부모가 기혼 상태인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고(49.4%) 이혼이 31.6%로 적지 않았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례는 48.1%였으며, 어머니와만 살고 있는 경우가 17.7%로 나타났다. 32.9%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둘 다에게 장애가 있었으며, 17.7%는 형제자매에게도 장애가 있어서, 부모가 장애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기초수급권자가 35.4%, 기초수급권자를 제외한 하층이 41.7%로 이들을 합하면 77.1%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¹⁰⁴⁾ 지적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277.2만 원)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15.2만 원)의 66.8% 수준에 불과하다.¹⁰⁵⁾ 한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가 언제나 자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차별적 사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와 관련된 대부분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손상이 더 많이 장애로 전환되고 장애인의 주변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없거나 부모 또는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장애가 있다는 것,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은 피해여성에게 배분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VI. 결론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지적장애여성은 지적장애 그 자체로 인하여 성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법은 중한 장애를 가진, 무성적인 지적장애여성에

104) 전영실, 이승현, 권수진 외(2010),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5~99면. 이 연구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10개 기관에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례 기록을 조사한 것이다.

105)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2014), 위의 책, 19~20면.

대한 간음을 전형적인 장애인 성폭력 범죄로 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도는 아니고 성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지 않은 때에는 피해자성이 의심된다. 장애인 피해자와 비장애인 피해자를 구분하는 법체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집중하게 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 성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다. 하지만 범죄의 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 판단의 초점 또한 가해자에게로 좀 더 이동해야 한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고 성에 대해 무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가 존재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해자는 단지 중한 피해자의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만이 아니라 친밀성,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 피해자에 대한 권력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과 보호망 부재와 같은 조건들을 이용하고 속임수, 보상, 유인, 위협, 무시, 격리, 심리적 부담의 야기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며, 마찬가지로 수단으로 범행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여 처벌을 회피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처벌의 강도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구성하는 본질은 피해자의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보다도 이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이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피해자의 장애 자체보다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fm
rfm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의 비판적 분석〉 토론문

김광일 (CBS노컷뉴스 사회부 기자)

폭력적인 성범죄 보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의 속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사를 쓰는 기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기자는 보통 '먹히는 기사'를 찾게 된다. 신문이건 방송이건 일단 독자나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읽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릭'을 받아야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 '피해자 유발론' 왜 자꾸 나오나?

'먹히는 기사'란 경험적으로 볼 때 일단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여기에 '공분할 수 있는 글'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성폭력 기사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서 기술할 때 독자에게 공감과 공분을 끌어내기 쉽다. 그런데 일선 취재기자나 데스크가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물론 기사에 쓰기 위한 '소스'는 주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나 가해자의 관점에서 그려진 정황들이 대부분이다. 사건 기사가 대부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판결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제보를 듣고 쓰이는 경우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려진 정보들을 습득하기 용이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은 때때로 '가해자의 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도 굳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글을 짓는다. 일부는 내용을 그렇게 구성하지 못했으면서 제목만 피해자의 관점을 다는 경우도 있다. 공감과 공분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발제문에서 다뤘다시피 '피해자 유발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언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피해자 유발론'을 학습한 적지 않은 남성들은 보도에서 내비치는 작은 오해의 소지를 놓치지 않고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13살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하은이(가명) 사건' 보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러한 시각을 피해가지 못했다. 독자의 공감을 받기 위해 사건을 아이의 시각에서 재구성해 기술했더니 "그러게 가출은 왜 하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는 왜 들어가서 성폭행을 당하느냐"는 댓글이 달린 것이다.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 이를 딱히 여긴 부모가 이렇게라도 친구를 사귀어보라며 채팅앱을 알려줬다는 내용, 그리고 아이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혼날까봐 무서워 가출했다는 내용을 본문에 실었음에도 이들은 '피해자 유발'을 강조하기 위해 제멋대로 해석했다.

하물며 이런 부분을 주의하지 않거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부러 '피해자 유발'로 읽힐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강조한 기사의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발제문에서 사례로 나온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20대 여성을...', '채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와 같은 기사는 여성을, 혹은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규정할 뿐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죄의식 자체를 흐리게 할 수 있다.

◇ 포털과 어뷰징 기사

기사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포털 체제가 공고화하고 소위 어뷰징 기사가 늘어난 까닭이다.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발달은 기존 언론 체제의 재편을 가져왔고, 해당 시장 안에서 뉴스기사는 눈에 띄는 제목을 통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나아가 내용까지도 자극적이어야 독자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뉴스는 그 수익원이 페이지에 달린 광고배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대안언론 등에서는 광고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후원금 등으로 생명을 유지하려 하기도 하고 있지만 성공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물론 페이지 배너광고의 경우에도 이렇다 할 '성공모델'이라고 칭할 만한 매체가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페이지 배너광고를 수익원으로 하는 온라인·모바일 뉴스는 대부분 트래픽과 광고수익

이 연동돼 있고, 트래픽은 접속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접속'이 '수익'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수익원이 확실하지 않은 매체나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단기간 접속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널리즘 본연의 의무는 내버려두고 자극적인 기사 양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기사 생산 및 유통을 포털사이트가 주도하게 되면서 심화된 경쟁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 기자 교육의 문제

성폭력 범죄의 보도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 정보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유발한 것처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거나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기자들은 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별 있는 보도를 위해서는 일단 기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사실 기자들도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일반인을 뛰어넘는 지식이나 감각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언론사나 언론사들을 아우르는 단체들에게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차원의 교육의 필요성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누누히 지적됐던 것에 비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지 못했고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단체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다. '인권보도준칙'이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성폭력사건 보도수첩' 등은 대부분의 언론사 사무실이나 기자의 책상에 그저 꽂혀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언론사의 경우가 그러하며, 온라인 위주 군소언론사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이 전무한 실정이다.

◇ 내 가족이었다면 내 친구였다면

사실 기자들이 한 가지만 주의하면 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바로 기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말 이 사회에서 함께 숨 쉬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물론 이런저런 사건들을 매일 접하고 이를 조각내고 가지쳐서 기사로 써야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기사를 쓰는 기자 본인이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기사를 읽는 독자 역시 공감하기 쉽지 않다. 또, 공감 없는 기사는 결국 피해자 유발론 등 오해를 낳기 쉽다. 무엇보다 기사 속에 나오는 성범죄는 우리 주위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독자 특히 남성 독자들이 이를 그저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쉽게 한다.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 토론문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년 6월 성폭력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 이후 제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 각 제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문은 2013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 중 10건을 대상으로, 성폭력전담수사관, 피해자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지원제도의 적용 과정을 분석하고, 1)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의 성실성과 전문성(성폭력과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의 문제와 수사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증인진술 시 통지의 문제, 2) 성폭력전담조사관의 전문성(성폭력과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의 문제, 3) 피해자와의 관계와 특성에 대한 고려없는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형식적 활용 문제, 4) 진술조력인 제도의 낮은 활용도 문제, 5) 그 외 수사재판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장애인 증인에 대한 조력의 공백을 지적하였다.

2015년 성폭력 수사실무에 관한 2건의 연구¹⁰⁶⁾를 진행하면서 발표문에서 지적한 대로 도입된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상의 하자과 관련 인력의 전문성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폭력전담조사관과 관련하여, 2013년 이후 성폭력 관련 수사의 적극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담체계의 부분적인 시행¹⁰⁷⁾으로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내 기존 관련 전담업무담당자의 비율이 전체의 1/4에 미치지 못해 성폭력 특성이나 수사절차상 2차 피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의 역할, 의미,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

106) 장다혜 외,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년; 김지선 외, 『성폭력 방지 대책의 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미간행, 2015년.

107) 지방경찰청 단위에는 성폭력특별수사대와 같은 성폭력전담수사부서가 마련되었으나 경찰서의 경우 사실상 성폭력전담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음.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서 단위는 성폭력 이외에 실종업무까지 포괄하는 수사부서로 확대되었음. 이러한 전환은 2015년 내 모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설치라는 전국적인 체계 구축의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로 인해 인해 수사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장다혜 외, 위의책 참조.

자에게 권리고지를 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 지원제도의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성폭력 수사가 이원화되면서 실제 성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성폭력 범죄의 기소에 필요한 주요한 조사사항이 누락되거나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자 반복진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발표문에서 지적한 진술조력인 미활용 문제나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에 조응한 통지 등 지원제도의 활용의 부재는 2013년 개정법 시행 후 강화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과 연계에 있어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의 공백과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나 담당자에 따른 편차가 나타나, 성폭력 피해자가 제도상 존재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통해 안전한 성폭력 수사와 재판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른바 ‘복불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편차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피해자보호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¹⁰⁸⁾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 및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¹⁰⁹⁾ 이러한 평가는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인식이나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낮은 절차적 권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협의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동행 및 참관과 같은 적극적인 보호·지원보다는 승소(확실한 처벌)를 위한 법률지원과 형사절차에 익숙치 않는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지원과 같은 법률적인 지원활동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국선변호사 권한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피해자 1차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수사 및 재판기관의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형사절차 중 담당자 또는 관할 기관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권한을 허용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¹¹⁰⁾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진술조력인의 미활용 문제는 진술조력인의 적은 수와 제도 초기에 나타나는 이해 부족의 문제들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2015년 현재 상근진술조력인 9명을 제외한 51명의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상근 진술조력인이 배

108) 2015년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3년도에 시행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 가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응답하였다. 장다혜외, 위의책, 2015, 215쪽.

109) 장다혜외, 위의책, 2015 참조.

110) 상세한 내용은 김지선외, 위의책, 2015 참조.

치된 해바라기센터 일부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 전반적으로 진술조력인에 대한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진술조력인이 배치된 해바라기 센터 이외의 사법기관에서 진술조력인을 활용할 때에 이들이 가진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와 비협조적인 태도는 진술조력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진술조력인의 전문분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근 지역에 있는 진술조력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불신 역시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진술분석전문가와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주기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평가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에서 그 영역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법기관 종사자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진술분석전문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진술조력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진술조력인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나 평가를 활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그 취지대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소한 절차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각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수사·재판 체계 및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표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관련 사법종사자들이 성폭력 및 장애인에 대한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이나 지원단체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폭력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를 반영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인력을 보충하여 성폭력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건 처리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제도 운용에서의 편차나 공백상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뿐 아니라 통합지원센터 및 경찰청, 경찰서 수사관, 성폭력전담검사, 성폭력전담재판부, 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¹¹¹⁾

1.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

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관리 및 선정에서의 개선

1)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삭제를 위한 기준 마련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11월 3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1)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의무, 사건수임 강요 및 합의강요 금지 의무,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보장 의무를 부여(제2조 제3항 이하)하였으며, 2)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해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삭제에 대한 규정(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삭제에 관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불성실성 평가기준이나 삭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검찰청에 따라 그 기준과 운영에 있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삭제를 평가하는 절차가 모호하여 삭제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삭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삭제와 관련된 기준으로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불성실성과 관련될 수 있는 취소사유는 사유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규칙 제16조 제1항 6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동항 5호)나 피해자 등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동항 2호),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동항 8호), 기타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동항 10호) 역시 이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사유는 배타적인 지표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축적된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사유들을 바탕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국선변호사의 불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할 수 있다.

둘째,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삭제 기준에 따라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관리 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관리 대장>은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111) 이하의 내용은 김지선외, 위의책, 2015에 실린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개선방안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미간행된 자료라 별도로 소개한다.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취소 등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서술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취소사유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취소사유를 유형화할 때에 불성실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구체화하여 포함하고, 일정 기간 이후 이를 평가하여 예정자 명부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취소 사유를 바탕으로 예정자 명부 삭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특히 피해자에 의한 변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해당 국선변호사의 설명 등 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변경 신청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무리한 요구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취소 사유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기준에 있어 피해자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고려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각 지방검찰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활동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변호사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인만큼,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전문분야와 경력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4년 11월 3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시 전문분야나 지원사례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자 명부 서식에도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이외에도 전문분야로 학위, 자격증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상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성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등 전문성의 정확한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에 있어 성폭력피해자나 아동학대피해자와 관련된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분야나 지원경력이 기재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나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분야 및 지원경력 역시 반영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명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에 있어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선정보다는 피해자의 특성과 욕구

를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경험으로 인해 특정 성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성별의 국선변호사에 의한 지원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나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피해자를 지원한 경력이나 통역이 가능한 국선변호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국선변호사 법률지원 활동의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권한 강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하여 시행초기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긴 하나, 여전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담당자별로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등 정보 제공이 비일관적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경우에도 검찰청과 담당자에 따라 허용범위를 달리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경우 사건처리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선정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결국 송치, 기소 여부,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파악 등을 알아내는데 있어 너무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낭비되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한 수사진행 통지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전송받아 파악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국선변호사 권한을 강화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사진행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반드시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형사사법기관에서의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이해 및 협력 강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형사절차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 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사사법기관 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인력들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국선변호사와의 형사사법기관 내 성폭력 전담인력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의 필요성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 활동이 형사소송절차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민사적·가사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업무 외로 지원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나 친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친권상실 후 친권자 지정신청 등 성폭력과 관련된 가사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현재 배상명령제도가 사문화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보다 광범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관련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보수청구 절차의 간소화 필요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보수 청구를 위해 상세 법률지원활동 각각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용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마련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변호사의 활동이 낮설었던 제도 초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수지급체계를 피고인 국선변호사 것처럼 실비를 포함한 기본보수를 정액으로 정해놓고 활동내역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변호사의 법률지원활동 중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의견진술 또는 의견진술서 제출, 피해자 조사 및 진술시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협의의 활동 등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법률지원활동은 필수적인 활동으로 하고, 그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수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필수적 법률지원활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서 언

급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불성실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

가. 진술조력인제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이해 및 협력 강화

피해자국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의 진술조력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형사사법기관 대상 홍보 및 업무지침, 네트워크의 마련이 필요하다. 진술조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진술조력 활동의 장애요소로 사법기관의 진술조력인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법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적이 되었으며,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조력이 이루어지는 피해자 영상진술녹화 단계에서 경찰관과의 진술조력인 역할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해 진술조력인 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진술조력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찰관의 진술조력인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시 진술조력인의 활동 및 협력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상호협력이 강화된다면, 진술조력인이 각 형사절차 단계별로 다르게 선정되는 등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오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사전평가 및 보고서 작성·활용에 대한 지침 마련

진술조력인의 주된 업무가 조사상황에서의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와 조사자 간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 활동이긴 하나, 진술조력인의 사전 평가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조사상황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진술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형사절차 중 전문가의 증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피해자의 반복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사전평가 및 조사 현장에서의 명확한 업무 범위,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진술분석전문가와 진술조력인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진술분석전문가와 진술조력인의 주기능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평가와 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에서 그 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조력인과 진술분석전문가를 활용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 진술조력인 선정에서의 개선방안

진술조력인들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등의 진술조력과 관련하여 전문화된 인력이긴 하지만, 아동과 장애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분야와 관련된 진술조력인들의 전문성을 반영한 선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사 및 재판기관에 제공한 진술조력인 명부에 진술조력인의 전문분야와 경력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기관에도 선정 기준 등을 제공해야 한다.

라.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슈퍼비전 등 사례관리의 강화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이외에도 진술조력 활동과 사례에 대한 공유 및 평가가 가능한 슈퍼비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술조력인이 새롭게 도입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진술전문가 제도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술조력 활동을 통해 축적된 사례들을 관리하고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술조력 모델 및 진술조력을 위한 도구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회의를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 진술조력인의 상근직 파견센터 마련의 필요

진술조력인이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나 진술조력인이 지원하는 종류의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거점기관을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 의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사건 등 진술조력인이 필요한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지역 내에 없어 진술조력을 받을 수 없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상근직 파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거점기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진술조력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진술조력인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전문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근직 파견센터의 운영을 통해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대한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바. 비상근진술조력인의 활용과 처우에 관한 개선방안

현재 상근진술조력인에 비해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진술조력 활동이 낮은 편이나,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진술조력인을 활용할 필요성이나 상근진술조력인이 배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술조력인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상근 진술조력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있어 개선이다. 현재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경우 피해자의 불참 등으로 인해 진술조력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용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수와 별도로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교육과 사례관리회의에 직업을 가진 비상근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혹은 주말을 이용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토론문

법의 ‘합리성’에 장애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먼저 15년을 한결같은 열정으로 인권운동을 펼쳐 오신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에 깊은 연대감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인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는 평소 공감의 기발함과 발랄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성/장애/성폭력이라는 이중, 삼중의 무게를 이렇듯 비틀면서 경쾌하고도 준엄하게 사회의 책무를 묻는 공감이 참 멋집니다. 공감은 장애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에 ‘일상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간 침해폭력, 매니저 폭력, 분위기 폭력, 얼떨결 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명명하며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¹¹²⁾ 공감의 지난 15년 활동은 장애차별과 성차별의 사회구조 안에서 보호와 통제를 받는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장애여성들이 지닌 ‘힘’을 찾고자 노력해온 지난한 발걸음이어서 더욱 뜨겁고 감동적입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발제3>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근거”는 이 분야 전문가께서 방대한 자료에 기반 해 명쾌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한 논문이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로서 발제자의 관점과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강조하신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점, 즉 피해자의 장애 자체보다도 가해자가 이를 어떻게 악용하여 성폭력 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반성폭력운동에서 주요 의제로 고민하고 설득해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고소 첫 단계에서 만나는 경·검찰에서부터 지적장애여성들의 일반적 특성과 성폭력 경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합리성’을 만들어 갈 것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발제자께서 정리하신 법원의 판단기준과 방향성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중 장애인 성폭력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12) 배복주(2011), “장애여성과 폭력,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와 앞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2011년 여성회의 : 여성운동 새로운 전환의 모색』, 한국여성재단(2011. 4.28-30), pp187-192.

1. ‘이분법’의 경계, 그 살얼음판을 넘어서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발제자는 “법원이 상식, 통념, 경험칙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법에 기초한 성폭력의 전형적 상을 법적 판단에 반영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기준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저항할 수 없음’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장애인 성폭력이 강간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협의설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피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현저한 인지능력의 부족이나 성에 대한 무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성경험이 있다, 혼자서 버스를 탈 수 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닌다’ 등의 사유들이 유죄입증을 방해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진술의 ①일관성, ②구체성 및 명확성, ③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④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⑤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⑥무고 가능성의 6가지 범주를 주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소위 비장애인의 성폭력 판단기준과도 특별히 다를 바 없어 장애인 성폭력 처벌의 공백은 예견된 현상입니다. 특히 발제자가 주되게 논의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분화’가 때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판단자의 그 기준에 들지 않거나 혼재되어 있는 상황의 피해자에게는 매우 위협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운동에서 피해자의 이분화는 늘 살얼음판처럼 논쟁적이었습니다. 1988년 발생한 성추행범의 혀를 절단해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했던 “목숨보다 소중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라는 변론은 당시 상해죄를 벗는 데에는 일견 실효성이 있었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정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명명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¹¹³⁾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입증에서 장애의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저항이 불가능했는지,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등의 판단기준은 결국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수많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혐의나 무죄의 근거가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무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법의 정의롭지 못함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불신과 분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최협의설’을 넘어 ‘동의하지 않은’ 사실로만도 인정할 수 있을 때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도 제대로 입증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최근 낙태죄 논쟁에서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법

113) 민경재(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한울아카데미.

269조에 낙태죄가 있지만, 모자보건법 14조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등 몇 가지 사안은 임신중지¹¹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협의설에 의한 강간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현실에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원치 않는 출산을 하기도합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해야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지도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상담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2.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으로 본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결 경향¹¹⁵⁾

김정혜선생님의 발제문에 이어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는 전성협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민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 운동은 물론, 법의 시행 및 적용과정 그리고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04년 10월에 출발하여¹¹⁶⁾ 매년 “올해의 여성인권 존중을 위한 디딤돌 & 걸림돌”을 선정·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총 155사례 중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건은 디딤돌 13건, 걸림돌 15건으로 총 28건이 선정되었습니다(<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참조).

(1) 걸림돌 사례들 :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대한 처벌관행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이름, 피해날짜 등 특정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공소유지 및 유·무죄 판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힘들게 하고 법률 해석의 오류를 내고 있다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전성협의 시민감시단에서 걸림돌로 선정한 사례를 보면, 한 검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에서 주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피의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기망하여 성폭력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걸림돌, 2010). 또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미성년이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114) 낙태(墮胎)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자궁에서 없애 버림’을 뜻하고 있어 이미 도덕적 판단기준을 담고 있는 용어라서 여성단체에서는 최근 ‘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꿔쓰고 있음.

115) 이미경(2014), “성폭력 법·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6권 제1호, 국회 입법조사처, pp69-100. (* 일부 발췌)

116)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2004),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문 및 주요활동”,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 자료집(2004. 10. 13).

있습니다(걸림돌, 2009).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식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부근 분식집에서까지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관계의 특성 상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맥락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재판부는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도 배척하였습니다.

지적장애 1급과 2급 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무죄 선고한 재판부들(걸림돌, 2004)이 있습니다. 또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일부 구체적인 정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과 사건 발생 정황에서 피해자의 저항가능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걸림돌, 2009). 그리고 강간 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폭력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재활작업장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걸림돌, 2008).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전문성 부족에 의한 무죄판결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는 인정하면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재판부(걸림돌 2009)도 있습니다. 나아가 16명의 청소년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력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보호처분 1, 2, 4호를 내려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걸림돌, 2011). 이처럼 관대한 처벌의 관행은 친족 일가가 지적장애 아동을 8년간 가해한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해자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 아동을 양육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걸림돌, 2008).

(2) 디딤돌 사례들 : 장애인성폭력 사건 수사·재판의 변화

장애인성폭력 관련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최근 바람직한 변화들이 체감됩니다. 먼저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각별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진행하고(디딤돌 2012), 피해자가 성정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자 담당형사가 피해자 주변 친인척을 찾기 위해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조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진료기록 사실확인서를 보던 중 피해자가 친부와 산부인과에 간 기록을 찾아내 성범죄의 결정적

인 단서를 잡아낸 수사팀이 있습니다(디딤돌, 2012). 지적장애피해자가 성인 여성이고 직장생활을 했던 점을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진술녹화 시 아날로그 시계를 읽지 못하고, 통합질문에 대한 답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현출하여 기소한 검사도 있습니다(디딤돌, 2012).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후 자취를 감추고 있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장애상태나 피해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소의 의견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모은 검사(디딤돌, 2012), 피해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놓여있었던 환경, 친구,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기억을 시간을 따라 떠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간 검사도 있습니다(디딤돌, 2012).

7년 전 불기소된 사건을 재수사했던 광주 도가니 사건의 경우, 사건의 피해자와 핵심 관계자들이 청각장애인 및 청각·지적 장애의 중복장애를 자신 사람들로 의사소통과 기억력 등에 제약이 있어 실제 진실발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사건의 증인확보 및 전문가 참여, 수화통역자의 위치 변화 등의 다방면에 노력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검사도 있습니다(디딤돌, 2012).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재판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집단에 대한 이해 없음으로 인해 증거조사 및 증거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는 지원단체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을 연계하고,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상담소를 찾는 등 사건 수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찰(디딤돌, 2008),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수사한 여경기동대(디딤돌, 2006), 정신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한 경찰(디딤돌, 2005) 등이 돋보입니다.

재판과정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장애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 결여의 문제를 ‘증거능력 없음’으로 배척하지 않아야 하고, 가해 수단인 ‘위력’을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 등을 포함해 넓게 해석하여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유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디딤돌, 2010). 이와 비슷한 경우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장애인 관련 성폭력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린 재판부도 있습니다(디딤돌, 2010). 같은 맥락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하거나 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

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디딤돌, 2009). 또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3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넓게 해석하여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한 재판부(디딤돌, 2007), 피해자의 지적장애 자체를 항거불능으로 인정한 판결(디딤돌, 2007)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일시 특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시기를 특정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구성요건으로 판단, 주변상황도 충분히 감안한 판결도 있습니다(디딤돌, 2014).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24개소의 성폭력상담소들이 연대하여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이름으로, 12년째 형사사법절차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경찰청·대검찰청·대법원 등에 공문으로 보내고 언론 보도를 하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형사사법절차 감시활동 자체가 피해생존자들에게 힘이 되고, 판·검사 및 경찰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주며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넘어 권리존중을 위한 작은 활동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3. 마치며

‘도가니’와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거의 모든 국민이 공분을 하지만, 실제 피해생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겪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되기 보다는 담당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법조문의 좁은 해석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혜 선생님의 발제는 그동안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이 좀 더 많은 법조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되어 하루 아침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법의 여신인 ‘디케’는 두 눈을 가리고 한손에 저울, 또 한손에는 칼을 들고 어떤 편견에도 영향 받지 않고 공명정대하면서도 준엄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법의 합리성’은 피해자의 특성과 경험이 배제된 채 성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가부장적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현행법에 균열을 내는 우리들의 목소리들을 더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감에서 꾸준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연구, 관련 판례 평석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가열차게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음에 거듭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해생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바꾸어가요!

〈참고자료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수사재판감시단’의
장애인성폭력 관련 디딤돌 선정 현황
(2004~2015)**

연도	수상자(소속/이름)	선정 이유
2005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전담수사반)	- 지적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 이고 신속한 수사
2006	부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박민자, 이모란, 박민선, 이숙자)	-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수사한 여경기동대
2007	대법원 제 2부 (대법관 김능환-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3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폭넓게 해석하여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
” ”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성철)	- 피해자의 지적장애 자체를 항거불능으로 인정하여 판결
2008	양천경찰서 (경위 성호선)	-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상담소를 찾는 등, 사건 수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2009	서울고법 제7형사부 (재판장 이광범, 판사 이주현, 판사 권덕진)	-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하거나 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
2010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손왕석, 판사 김기수, 판사 강윤희)	- 지적장애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결여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을 반박하고 지적장애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결여의 문제를 ‘증거 없음’으로 배척하지 않아야 하며 성폭력의 수단인 ‘위력’을 가해자의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 등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

<p>” ”</p>	<p>대구지방법원 제12 형사부 (재판장 임상기, 판사 박강민, 판사 박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지체2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장애인 관련 성폭력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림
<p>2012</p>	<p>광주지방경찰청 (전 청장 이금형 전 청장, 경감 김현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정 현)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불충분으로 2006년에 불기소 처분된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수사를 재기하여 전문가 소견을 적극 반영한 경찰 -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목격자 증인신문, 전문가 의견조회 등 적극적인 공판진행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검사 - 청각 및 지적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하여 엄중한 유죄판결
<p>2014</p>	<p>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유남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전주 자립원사건) - 지원기관과의 공조 통한 공소 제기
<p>” ”</p>	<p>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특성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공소유지)
<p>” ”</p>	<p>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변성환, 판사 유청희, 판사 박미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일시 특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시기를 특정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구성요건으로 판단, 주변상황도 충분히 감안한 판결(피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해석하여 이해)
<p>2015</p>	<p>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 (검사 정명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 3급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 확보하려는 노력

〈참고자료 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수사재판감시단’의
장애인성폭력 관련 결림돌 선정 현황
(2004~2015)**

연도	선정자(소속/이름)	선정이유
2004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 (재판장 고규정, 판사 채승준, 판사 정만규)	- 지적장애 2급 청소년의 가해자에게 무죄판결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윤재운, 판사 김경호, 판사 김주호)	- 지적장애 1급 청소년의 가해자에게 무죄판결
2006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장 이재환, 판사 김종문, 판사 김태호)	-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의 진술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2008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오준근, 판사 김현범, 판사 김진희)	- 친족 일가가 지적장애 아동을 8년간 가해한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 아동을 양육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집행유예 판결
"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신용석, 판사 최진숙, 판사 권창환)	- 강간 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폭력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재활작업장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
2009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합의 1부 (재판장 김재승, 판사 김연경, 판사 박민준)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판사 이언학)	- 지적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미성년이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
" "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신용석, 판사 김대규, 판사 이재찬)	- 남성 중심적이며 비장애인 중심적 시각으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을 행해온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 "	대구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김정도, 판사 송민화, 판사 이상률)	-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일부 구체적인 정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과 사건 발생 정황에서의 피해자의 저항가능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2010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김덕곤)	-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핵심을 보지 않고 주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피의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기망하여 성폭력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1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판사 나상훈)	- 16명의 청소년들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 성폭력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보호처분 1,2,4호를 내려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
201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김태광)	- 지적장애 여성을 2명의 남성이 강간한 사건 - 검사가 사건실체 파악에 노력하지 않고, 무관심, 무성의, 공판 중에 판짓, 상고 요청 거부
"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이규원)	- 지적장애 2급 여중생을 학교선배가 강간한 사건 - 서로 사귀기로 한 사이라고 불기소 처분/ 무고혐의로 기소
"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채석현)	-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16명의 고등학생이 한달간 강간한 사건. - 불기소 처분
" "	목포경찰서 (형사 이강호)	- 지적장애 남자청소년이 가해자를 대변하고 두둔, 합의 종용, 고소취하서를 합의서로 속여 받아내는 등 직권남용
2014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덕, 판사 고진흥, 판사 임한아)	-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으로 원심에서 1년6월 실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구성요건에 맞춰 정확하게 공소사실 입증을 요구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2016. 시민감시단 언론 모니터링 활동보고

1. 시민감시단 구성 : 2016년 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양성교육 이수하고 장애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 중 8명 선정

2. 시민감시단 단원 : 김연아, 김예원, 김희정, 이도희, 이유정, 이주영, 조세은, 진성선

3. 모니터링 활동기간 : 2016년 8월 17일 부터 현재까지

4. 활동방법

- ◆ 기획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범위와 모니터링 방향 논의
- ◆ 1단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를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 함.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과 삽화 등의 이미지를 논의 된 방향에 맞춰 모니터링 진행.
- ◆ 2단계: 검색된 기사 중 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성폭력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
- ◆ 3단계: 분석한 기사 중 일부를 선택하여 문제적인 표현이나 관점을 바꿔 '기사 다시 쓰기' 진행.

5. 활동결과

- ◆ 기사 다시 쓰기
- ◆ 장애표현분석
- ◆ 칼럼

기사 다시 쓰기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1)

지적장애인 34시간 '엽기 성고문'...여고생 일당 중형 선고 (출처:뉴스1/ 2015. 11. 12)
법원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장기격리 필요"

지적장애인을 꺾어 모텔에 가둔 채 폭행과 성추행 등 엽기적 고문을 한 대학생과 여고생 일당에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 등 대학생 2명에게 징역 20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



행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 등 3명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상한 형량인 15년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4월25~27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한 모텔에서 A(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A씨를 모텔로 유인·감금한 뒤 동영상을 촬영,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A씨에게 침과 담뱃재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거부하면 폭행과 함께 맨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했다. 또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부위를 때리고 자위행위를 강요했다. 심지어는 A씨 항문에 칫솔을 삽입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당시 이들의 범행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공범중 한명이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위해 피해자의 장기 매매를 모의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삽화를 삭제. ◆ 지나치게 선정적인 행위태양 묘사는 삭제 ◆ 성폭력을 엮기 성고문 등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판결 선고 기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법률지식 제공이 필요함 ◆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 측면의 함의 언급이 없이 판결 결과 정보제공에만 집중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 사진이나 삽화를 넣어야 한다면 가해자의 치밀성, 고의성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선정적이지 않게 넣기를 제안함. ◆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조사하여 조금 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 ◆ 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 지원 미비시 제도적 결함 등 언급이 많아지길 기대함.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김예원 기자

지적장애인 34시간 감금, 성폭력 가해자 일당 중형 선고

피해자 지원체계 허점 보완해야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모텔에 가둔 채, 폭행, 협박, 성폭력을 가한 대학생과 여고생 일당에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337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 등 대학생 2명에게 징역 20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 등 3명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상한 형량인 15년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4월25~27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한 모텔에서 A(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A씨를 모텔로 유인·감금한 뒤 동영상을 촬영,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이들의 범

행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공범중 한명이 부모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 뿐 아니라 망막손상 등 신체적인 후유증을 겪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 1인이 공탁한 소액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법무부는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는 스마일센터를 개소하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사건 초기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지연되고 심신안정을 위한 쉼터입소도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의 우려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예원 서울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구조금 ‘신청’ 을 전제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권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또한 전국에 장애인 피해자 쉼터는 가정폭력쉼터 3곳, 성폭력 쉼터 8곳, 학대장애인쉼터 4곳 뿐이고 그마저도 남성이 입소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라고 설명했다.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2)

장애아 성폭행한 교사들... 실화 영화에 전국 '분노의 도가니'

(출처 : 조선일보 / 2011. 9. 27)

2004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 교장·행정실장 형제 및 직원 청각장애아들에게 몹쓸 짓 "가해자 10명 넘는다" 증언 - 장애인 부모 둔 여학생, 12세부터 6년간 성폭행 고발 6명중 4명 솜방망이 처벌 - 2명 1·2년 형, 2명은 집행유예... 교사 1명은 지금도 학교에 영화 '도가니'에 논란 폭발 - "재수사 하라" 서명 운동 확산, 법조계 "재수사는 불가능"

2004년 12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의 청각 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밤이었다. 김모(62) 교장은 이 학교 학생인 13세 소녀를 교장실에 강제로 끌고 갔다. 소녀는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성인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소녀는 청각 장애 4급 장애인. 학생을 돌봐야 할 교장은 교장실에서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학교장뿐 아니라 행정실장, 기숙사 생활지도교사 등 교직원들은 2000년부터 무차별적으로 말 못하는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피해 학생도 10여명이란 말이 돌았다. 보다 못한 한 직원이 2005년 6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실을 폭로했다. 상담소는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 가해 교직원 10여명이라는 증언

그해 11월 혐의가 확인된 김모(58) 행정실장과 이모(36) 생활교사만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김 행정실장은 학교 설립자의 차남이고, 김 교장은 설립자의 장남. 형제가 학교 요직에 앉아 학생들을 성 노리개로 유린했던 것이다.

<중략> 이후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됐다. 학교에선 가해 교직원만 10명을 초과한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학생들에게 버젓이 "한 번만 하자"며 요구한 교사까지 있었다고 한다. 당시 18세였던 여학생은 12세 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 2급, 어머니는 정신 지체 1급이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딸을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 4명만 솜방망이 처벌

<중략>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형을 선고받은 김 교장과 박 교사는 2008년 7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였다. 법을 모르고 지친 피해자 부모들은 상고를 포기하고 말았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사법부가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은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인권위가 고발한 6명 중 실제 사법 처리된 사람은 4명이다. 학생들을 성추행한 행정실 직원 김

모씨와 전모(45) 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전 교사는 2008년 1월 복직해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김씨는 학교를 떠났다.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 개인 의견이 들어간 드라마틱한 내용,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점, 가해자의 계획적 범행을 문제 삼기보다 피해자 가족의 장애를 피해의 원인으로 기술 ◆ 피해자가 미성년, 장애인, 심신미약 상태가 성폭행 이유 또는 조건인 듯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언론사에서 성폭행 기사를 다룰 때 장애에 대한 정확한 표현, 단어, 문장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만으로 독자는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공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성폭력 사건의 적나라한 보도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이 다루어지도록 한다. ◆ 적절한 단어, 문장의 변화로도 피해자 보호하면서 사건 보도가 가능하다.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김연아 기자

2004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 교장·행정실장 형제 및 직원 청각장애아들에게 성폭력

"가해자 10명 넘는다" 증언 - 청각장애 4급 여학생 12세부터 6년간 성폭력 고발 6명중 4명 상식이하 감형처벌 - 2명 1·2년형, 2명은 집행유예, 가해자 1명은 지금도 교사 직
 영화 '도가니'에 논란 폭발 - "재수사 하라" 서명 운동 확산, 법조계 "재수사는 불가능"

학교장뿐 아니라 행정실장, 기숙사 생활지도교사 등 교직원들은 2000년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피해 학생도 10여명이란 말이 들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2005년 6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실을 폭로했다. 상담소는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가해 교직원 10여명이라는 증언
 그해 11월 혐의가 확인된 김모(58) 행정실장과 이모(36) 생활교사만 성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김 행정실장은 학교 설립자의 차남이고, 김 교장은 설립자의 장남. 형제가 학교 요직에 앉아 학

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중략〉 이후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됐다. 학교에선 가해 교직원만 10명을 초과한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4명만 솜방망이 처벌

〈중략〉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형을 선고받은 김 교장과 박 교사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008년 7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와 같은 미흡한 성폭력 범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사법부가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은 2009년 9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인권위가 고발한 6명 중 실제 사법 처리된 사람은 4명이다. 학생들을 성추행한 행정실 직원 김 모씨와 전모(45) 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전 교사는 2008년 1월 복직해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김씨는 학교를 떠났다.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3)

‘조카가 보는데...’ 지적장애 제수 성폭행한 70대 (출처 : 대구CBS / 2015. 12. 3)

대구지법, 인면수심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

지체 장애를 앓는 조카가 보는 앞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3일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카가 옆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제수를 간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그 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을 잃은 친동생의 식구들을 보살펴 준다는 구실로 데려와 경제적,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정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쯤 경북에 있는 원룸에서 조카(20,여)가 함께 있는데도 "성관계를 하자"며 지적장애 2급인 제수(50)를 한차례 성폭행했다.

앞서 2009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조카(당시 여중생)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01년 시각장애 1급인 동생이 투병 끝에 사망하자 장애가 있는 제수와 조카(지체장애 6급)를 돌본다는 구실로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왔다.

매달 60~120만 원의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대신 수령해 관리하면서 용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온갖 허드렛일을 맡기고 부렸다.

최씨가 제수와 조카를 학대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이들은 2014년 9월 분가했다.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내용에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용어와 장애인 가족 내의 성폭력피해 사실만 작성되어 있다. ◆ 보호라는 이름하에 착취되는 상황, 성폭력 피해가 생기게 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용어 수정 ◆ 사건과 관련 없는 흥미위주의 피해자의 개인 정보 노출 자제 ◆ 사건 발생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 : 국가(공공기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 돌봄의 책임이 전가되면서 발생한 문제임.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조세은 기자

장애인 성폭력...징역 10년.. 법적처벌강화 보다 구조적인 문제 개선하여야...

법원은 동생의 아내와 미성년자 조카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동생이 사망 후 미성년자 조카B를 강제추행하고, 약 1년간 지적장애인 제수 C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와 C씨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및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법률구조공단(132)등과 연계하여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달 120만원정도 나오는 두 모녀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를 착취하고 성폭력 범죄를 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열악한 상황이며 실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돌봄을 가족 등 개인에게 책임지게 하고 있다.

장애인 각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 탈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사회참여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 및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가족에게 돌봄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당사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착취당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제도의 허점이 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은 “장애인가정의 성폭력 사건은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친밀감과 협박으로 성폭력 가해를 반복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을 돌봐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용하는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성폭력의 피해를 입거나 수급비가 착취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라며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잘 이행되도록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4)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30%는 '사이코패스'"

(출처 : 연합뉴스 / 2013. 4. 8)

단국대의대, 국내 성폭력범 50명 첫 면접조사결과

국내 성폭력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성도착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3명은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됐다.

단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임명호 교수팀은 지난 2011년 당시 치료감호소에 수감중인 성범죄자 5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 64%(32명)가 성도착증 상태로 진단되는 등 94%가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주요우울장애 16명(32%), 알코올사용장애 12명(24%), 충동조절장애 9명(18%), 조현병(정신분열병) 6명(12%), 조울장애 2명(4%)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인 정신질환보다 상태가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16명(32%)이었다. 흔히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이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그대로 놔 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형 범죄로 비화하는 게 특징이다.

조사 대상 성범죄자들의 평균 나이는 37.3세로, 모두 남성이었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성적 비행행동이 15~25세에 정점을 나타낸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로 볼 때 상당수 성범죄자들이 10년 이상의 문제행동이 나타난 이후에야 법망에 걸려 수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임명호 교수는 국내에서 이뤄진 3건의 화학적거세 중 2건을 집도한 바 있다.

연구결과는 대한법의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

임 교수는 "국내에서 감호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적 질환을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왜곡된 성의식과 성행동, 정신병리를 토대로 근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의 문제 : 표본통계의 경우 표본 구성은 적절한지, 제시되는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 기준과 전후맥락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사작성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모집단을 치료보호감호소 수감자, 표본집단을 50명으로 산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국내 성폭력범의 10명 중 9명이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면밀한 분석없이 사용된 해당 기사의 통계자료는 왜곡되어 해석될 소지가 많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사작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 혐오 조장 및 사회 통념 강화 :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30%는 '사이코패스'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섬뜩했다. 해당 기사는 통계자료를 인용해 객관적인 현상인 듯 설명하고 있지만 왜곡된 해석으로 대중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정신 장애인은 위험하다’,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는 위험한 존재, 개인의 일탈에 의해 일어난다’라는 대중의 혐오, 통념(편견)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의 잘못된 현상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강화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부추겨서는 안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목적에 맞는 통계자료 사용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이하 전성협) 소속기관 중 지속적으로 상담통계를 내고 있는 몇개 기관의 통계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기관별로 성폭력 상담건수의 편차는 있으나 2012년~15년까지 평균 1,300여건의 상담자료이기 때문에 근거자료로서 신뢰도는 높다고 판단하였다. ◆ 성폭력 사건의 일상적 관계성에 주목 : 해당 기사를 보면서 성폭력 사건의 원인은 특정 장애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회구조적 이유에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따라서 전성협 분석내용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항목을 집중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나무 기자

“성폭력 사건, 일상적 관계성에 주목해야”

대검찰청 2015년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9,863건이다. 본 통계는 2014년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 전산입력한 각 범죄 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범죄분석에서 ‘발생건수’란 발생한 범

죄 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고 하였지만 형사입건되지 않은 건수,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더하면 실제 범죄건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이하 전성협) 소속기관 중 지속적으로 상담통계를 내고 있는 몇 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하다보니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회인식과 언론보도에 반해 2012년~15년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11,959건 중 9,188건(전체건수의 76.83%)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고>) 따라서 분석 내용 중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항목을 집중 분석하였다.

	상담수	단위(건,%)	
		아는 사람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565	495	87.61
한국성폭력상담소	1,321	1,099	83.19
201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상담소(20개소)	1,673	1,287	76.93
한국여성민우회	1,292	964	74.61
한국성폭력상담소	1,418	1,205	84.98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1,450	1,174	80.97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1,944	1,110	57.10
한국여성의전화	671	641	95.5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상담소(20개소)	1,625	1,213	74.65
	11,959	9,188	76.83

피해 연령별로 아는 사람의 유형을 분석한 2013년~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자료를 보면 성인은 직장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 어린이/유아는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그 중 2015년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인은 직장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2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55건(28.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친, 인척에 의한 피해는 48건(25.1%)으로 뒤를 잇는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75건(65.7%), 25건(58.5%)으로 나타났다.

전성협 장애권역상담소 통계자료에선,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아는 사람의 비율 중 동네사람의 비율은 2013년 554건(29%), 2015년 556건(26%)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급생 선후배 비율의 경우

2013년 192건(10%), 2015년 162건(7.5%)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중 지적장애여성의 비율은 2013년 1,227건(73%), 2015년 1,264건(78%)으로 가장 높다. 이 결과에 대해 통계자료는 “지적장애여성은 보호와 통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타인 특히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쉽게 넘기거나 빼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 분석한다.

한국여성의 전화 고미경 대표는 “대다수가 바라보는 성폭력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무차별적인, 극악한 형태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가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으로 인해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성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법적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식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차별, 왜곡된 성인식 등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 및 젠더 감수성, 성인권교육 등 사회통념과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토론 및 참여형 교육이 학교,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대책을 제안하였다.

위의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사건은 관계성과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인해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 사회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5)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무너진 스무살의 꽃(출처 : 에이블뉴스 / 2016. 9. 12)

경찰 “증거 부족” 불기소...피해자 후유증 ‘심각’장애특성 맞는 검찰 재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사건 이후 우리 딸은 밤에 잘 때도 경련을 일으키고 총 맞아 죽을 거라고 말하는 등 공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엄밀하게 밝혀져서 장애아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부모로서 바램입니다.”

마이크를 든 A씨의 어머니 이 모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6월20일 이후 3달여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 딸이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누구도 A씨의 가족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단다. 이제 갓 스물, 굵디고운 딸의 꿈도, 일상도 완전히 무너졌다.

6월20일 오후, 서울 소재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던 A씨는 옆 반의 담당 사회복지무원 B씨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 학생들만 남아있던 점심시간에 교실로 들어온 B씨는 A씨를 성추행한 것. 놀라 달아나는 A씨를 뒤쫓아 폭행하고 손으로 처녀막까지 파열시켰다.

사건을 전해들은 이 씨는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산부인과를 방문해 A씨의 처녀막 파열에 대한 진단서를 증거로 확보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진술에 어려움이 있어 진술조력인과 몇 시간에 걸쳐 경찰 수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불기소의견을 제출했다. A씨의 진술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 이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다. 자다가 일어나 구석에 숨고, 식은땀을 흘렸다. 깨어있는 시간에도 뜬금없이 “그러지 말라”며 눈물을 쏟았다.

반면, B씨는 무죄임을 연신 주장하며, 학교를 떠나 전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없음’에 학교에서도 심드렁하게 반응했다. 보호막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망가져가는 A씨와 A씨의 가족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씨는 “처녀막 손상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했다.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 아이로서 진술을 조작할 수 없다. 사건 이후 밤에 잘 때도 경련을 일으키고 전기파도 너무 확산돼 항경련제를 두 배 이상 처방받고 있다”며 “매일 공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 씨는 “B씨의 경우 현재 전근 근무를 임명받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며 “사건이 엄밀하게 밝혀져서 장애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 검찰에서는 재수 사해서 끔찍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회장은 “피해자가 정확하게 가해자를 지목했음에도 가해자

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며, 처녀막 파열 결과는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며 “지적장애 2급은 있는 사실을 서투르게 표현할 뿐이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피해자는 매일 밤 고통을 호소하는데 가해자는 매일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지적장애 여성들이 언제까지 성피해를 받아야 하나”며 “지적장애인은 성추행을 당해도 변론을 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면 지적장애 여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대상의 80%가 발달장애인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사법기관에서는 명쾌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10여년이 넘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김 대표는 “지적장애 성폭력은 폭력보다도 은밀한 곳에서, 증거를 충분히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범죄의 특성이다. 발달장애인은 더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증언”이라며 “비장애 중심으로 하던 조사를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검찰에서 분명하게 재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특수학교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를 고려한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는 230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수사의 필요성과 촉구를 요구하는 것이 기사의 쟁점 ◆ 사건의 재 기술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필요 ◆ 스무살 꽃다운, 짓밟힌, 무너진 등의 문구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왜곡, 통념화하는 부적절한 표현 ◆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한 조사과정의 문제점 부각 ◆ 피해자의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수사 촉구에 대한 당위성 주장이 쟁점임으로 전문가 두 명의 인터뷰 내용은 본래대로 유지하고 사건의 내용은 간단한 개요만을 기록하였다. ◆ 성폭력기사 대부분이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1336 긴급전화, 상담기관, 각종지원내용을 통해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이도의 기자

장애특성 고려하지 않는 성폭력사건 수사, 재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지난 6월20일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가 이 학교 학생 A씨를 성폭력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 피해자측은 폭행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를 증거로 확보하고 진술조력인과 몇 시간에 걸쳐 경찰 수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경찰은 진술서의 문맥이 맞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견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 불기소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성폭력사건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수사 해줄 것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대상의 80%가 발달장애인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사법기관에서는 명쾌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며 “2000년대 이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10여년이 넘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 성토했다.

이어 박김 대표는 “지적장애 성폭력은 폭력보다도 은밀한 곳에서, 증거를 충분히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범죄의 특성이다. 발달장애인은 더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증언” 이라며 “비장애 중심으로 하던 조사를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검찰에서 분명하게 재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팀 팀장은 “이 사건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이 사건에 대해 더욱더 명백하게 진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몇 개의 감시 카메라 설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될 것처럼 책임을 피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목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가해하지 않음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가해자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학교 사이에서 피해자만 있는 이 사건의 권력관계를 잘 파악해 수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비디오 녹화진술 등 외에도 상담, 의료,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 특히 진술조력인제도는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사건에 있어 진술조사시 의사소통을 위한 라포형성에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 각 단계에서부터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장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피해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정도,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피해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폭력상담소등의 상담지원,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지원, 법률적지원, 수사지원, 그리고 보호와 사회복귀지원 등이며 지원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 ▶ 여성가족부(정책안내) <http://www.mogef.go.kr>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6)

손발 묶고 성폭행...‘도가니’ 실제 인물 구속(출처 : KBS / 2011. 12. 30)

<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에 나온 대로 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생을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리포트> 청각 장애 여학생에게 가해진 이 충격적인 성폭행 장면이 지난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18살이던 청각장애 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또, 범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청각 장애 학생 B군에게도 마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선생님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김 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B군은 당시 투신자살까지 시도해 등뼈까지 골절됐고, 현재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 진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공분한 여론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돼,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터뷰>정경채(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피해당해 트라우마가 지속됐고, 목격자가 확보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도 장애인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에서 '손발을 묶고' 처럼 자극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언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 가해자가 6년 만에 구속됐다는 점이 기사의 중점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었다. ◆ 왜 6년이 되어서야 구속이 되었는지, 앞으로 필요한 지원체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을 묘사한 자극적인 문장 수정 ◆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녹취 삭제, 문장으로 풀어서 사실 전달로 대체 ◆ 사건의 문제 파악 및 제안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 추가 서술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이유정 기사

‘도가니’ 인화학교 행정실장 사건발생 6년 만에 구속… 앞으로의 과제는?

영화 '도가니'의 실제인물,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되었다. 이를 목격한 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청각장애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지난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18살이던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또, 범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청각 장애 학생 B군에게도 심각한 상해를 입힌 범행이 드러났다. 또한 가해자 녹취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예의가 어긋난다며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 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B군은 당시 투신자살까지 시도해 등뼈까지 골절됐고, 현재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계속 되는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 진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로부터 6년 만인 오늘 구속된 것이다.

그럼 왜 사건발생 6년 만에 구속 되었을까? 우선 특수학교 기숙사 내에 제대로된 감시체계나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이고, 법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지원체계가 부실할 실정이다. 영화 '도가니' 로 촉발된 공분 여론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비로소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로써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정경채는 “피해 때문에 트라우마가 지속됐고, 목격자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관련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형량으로만 사건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과 관심이 요구돼 보인다. 또한 제2의, 제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본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대부분 사회전반적인 문화와 성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인권적, 예방적인 차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가니 사건도 청각장애인의 특성이 법 절차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2006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장애 특성이 고려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영화가 일으킨 공분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7)

'그것이 알고 싶다' 13세女, 성폭행 후유증 정신병원서 또 당해 '분노'

(출처 : 티브이데일리 / 2016. 6. 12)

'그것이 알고 싶다' 13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도리어 대가를 받고 자발적 성매매를 저지른 가해자가 됐다. 11일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13살 소녀 은비(가명)가 왜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 매매자로 오인되었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14년 6월 6일 딸 은비가 사라졌고 6일 만에 되찾았다. 위치 추적 결과 은비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고 있었다. 은비 엄마는 "(경찰에)아이가 가출 할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이야기 하나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있으라더라"고 했다. 은비는 지능 지수 60~70 사이로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졌고 학교에서도 특수장애 학급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딸이 걱정돼 딸을 찾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단 은비 엄마였다.

결국 6일 만에 찾은 딸은 악취가 심했고, 상태가 심상찮았다고. 또 병원을 가자해도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수갑까지 채우고 갔을 정도였다. 상태가 이상해 산부인과 진료를 했고, 은비는 처녀막이 파손되고 안에 이물질과 정액이 꼭 차 있었다. 은비는 수십 명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다. 엄마는 성폭력으로 신고를 했지만, 사건은 성매매가 됐다. 도리어 은비가 남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한 경찰이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은비가 사라진 날 부터 6일간의 기록을 되짚었다. 실종 당일 은비는 엄마 휴대폰을 갖고 놀다 떨어뜨려 깨졌고, 상황 판단이 느린 은비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작정 밖으로 고치러 나갔다. 통화 기록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은비가 남자를 만났고, 잘 곳을 찾았다고 했다.

진술녹화 영상에서 은비는 "'너 이리로 올라?'해서 모르는데 모텔 같은 데 서서 걸어가다 씻으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씻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아, 창피해"라고 했다. 이어 "성관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총 8명과 성관계가 있었고, 잘 데가 없으면 화장실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 다시 잘 곳을 구해준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한 남자는 심지어 지방까지 데리고 가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방치했다.

모든 남자들이 회피했지만 이중 한 남자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만났다. 그는 "밥을 사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개가 너무 피곤하다 해서 찜질방에서 자고 싶다고 하더라. 자기 몸 만져봐도 된다고 그래서 만졌었다. 개가 자기 몸을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 만져보라 하더라"며 은비가 먼저 성적인 제안을 했다고 했다. 이어 "자기랑 사귀면 이런 거 더 해도 된다고 했다. 얼음방에서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자기가 미안하다며, 재워줄 사람 있다고

가야 한다고 갔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은비는 "찜질방 가서 이야기 나누다가 자고 있었는데, 배 위가 간질간질해서 깬다. 갑자기 더 올라갔다. 그땐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었다. 가슴을 만졌다. 싫다고 말하긴 했다"며 "얼음방 가서 했다. 옷을 벗으라고 했다. 힘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남자 말처럼 다른 남자를 만나려는 게 아니고, 만질까봐 무서워 거짓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잤다고 했다.

남자들 중 또 하나는 "처음엔 심심풀이로 진짜 올까 싶어 오라 했다. 진짜 왔다. 잘 곳이 없다 해서 모텔에 갔다"고 했다. 그대로 나왔으면 되는 건 아니느냐는 제작진 물음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지 않느냐"며 절대 강압적인 건 아니라고 했다. 또 은비가 헤어진 뒤 계속 전화를 했다고 했으며 "그게 강압적인 거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고 주장했다.

은비 엄마는 다시 돌아온 은비가 해롱해롱하고 견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고 했다. 조울증처럼 갑자기 예민해지고, 집을 나간다고 하거나 자해 시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다. 갑자기 흥분하며 광기에 휩싸인 딸은 칼을 들고 커튼을 찢고 흥분했다. 정신병원까지 갔었다.

은비 엄마는 "애는 상처 받고 몸도 망가지고, 사후 피임약도 먹고 힘들어하는데 보고 있는 자체가 벌 받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아빠 없이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엄마는 열심히 키우고자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 역장이 무너졌다. 하지만 상대 남자들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수자로 처벌받았다. 대개 벌금형에서 끝났다.

대가가 오갔으니 성폭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었다. 심지어 한 남자는 모텔비를 은비에게 만원을 달라고 해서 냈기에 서로 같이 지불해 성매수도 아닌 무죄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었다.

은비는 정신 연령이 7세 정도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지적 장애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성매매로만 봐서 기소가 된 것이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장애를 딱히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은비 엄마는 전문가와 학교 선생님 의견까지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마저 은비의 지적 장애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렇게 밖에 정서적 흐름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상황 판단이 미숙한 은비가 채팅창을 열었을 때 남자들이 먼저 유인해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자들은 은비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할 때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게 어떻게 성폭행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중 한 명만이 자신이 성폭행을 한 것 같다고 죄를 인정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은비의 행동을 성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은비는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갔다. 하지만 그 곳에서도 술을 마신 뒤 보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형편이 어려운 은비네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남은 민사 재판에 임하고 있다. 평생 남은 은비 소녀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내용 중 자극적인 부분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인 기사로 쓴 것을 다시 바꿔 쓰고 싶었다. ◆ 가해자의 논리와 변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 제목에서 피해자를 '00여'로 표현하는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심으로 제목을 선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방송 내용을 다시 기사화할 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 강조해서 쓰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성매매 가해자로 바뀐 이유>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한다. ◆ 소설과 같은 세밀한 묘사로 인한 불필요한 선정성을 피하고 피해 내용을 사실 위주로 기록한다.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다루어준다. ◆ 기존 방송 리뷰 기사 중 비교적 적절한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함.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이주영 기자

8명의 남자, 13세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하고도 성매매로 둔갑한 사연

11일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3세 소녀가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성매매를 저지른 가해자가 된 사연을 방송했다. 은비(가명)가 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자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지적장애를 가진 은비(가명· 당시 13세)는 가지고 놀던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을 깨뜨리자 엄마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는 은비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 8명에게 성폭력을 당한다. 일주일 후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은비는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신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심지어 50대 남성 직원에게 잇달아 성추행까지 당했다.

끔찍한 성폭력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어이없게도 성매매 사건으로 바뀐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은비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과 음식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성매매로 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아이큐 70, 7세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진 은비가 비장애 성인 남성들의 위계에 넘어간 상황 맥락을 살피지 않았다. 특히 경계선

지능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판결에 불리한 점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은비의 사건 당시 나이다.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아이를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은비는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청법상 성매매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 관계가 중요 증거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제강간〉을 적용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공론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방송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인 13세 소녀가 당한 끔찍한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방송한 점이나 가해자의 변명을 육성 그대로 인터뷰해 내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히 다루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쓰고 싶은 기사 원문 (8)

친구 할아버지까지...마을 어른들이 지적장애아 성폭행

(출처 : 한겨레 / 2012, 11, 28)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같은 마을 어른들이 4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붙잡혔다. 성폭행 피의자 중에는 피해 소녀의 아버지 지인과 친구 할아버지 등도 포함돼 있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13)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7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아무개(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의 친구 할아버지인 김씨는 피해자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인 2009년 3월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집에서 ○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폭행 뒤 ○양에게 용돈으로 5000원~1만원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이아무개(57)씨도 ○양을 성폭행하는 등 ○양은 같은 지역 주민 5명으로부터 4년간 성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의자 중에는 ○양의 친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인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양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데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이들은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정자, 차 속, 방갈로 등에서 성폭행을 하면서 성인 포르노에 나오는 행위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농사일로 집을 자주 비워 범행이 장기간 계속돼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다리가 불편한 이씨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장애인 돌보미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졌다. 이 돌보미는 이씨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양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김덕일 무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성폭행범들이 ○양의 휴대전화로 연락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도 이런 사실을 장기간 알아채지 못했다. 피의자들이 1~6번씩 성폭행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양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진술을 제대로 못해 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은 현재 전북 전주의 한 쉼터에서 살면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다시 쓰고 싶은 이유	다시 쓴 기사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과는 관련 없는 피해자 가정환경에 대한 서술, 피해 사실에 대해 ‘마을 정자, 차 속, 방갈로’와 같은 구체적 장소 언급, ‘성인 포르노에 나오는 행위요구’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가해자의 장애를 언급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지적장애를 비하 또는 편견을 강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서 다룰 때, 피해자의 장애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장애여성을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통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수사과정은 피해자의 장애특성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도 기사에서 언급되었으면 한다.

다시 쓴 기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진성선 기사

지적장애아동 성폭력 혐의 5명 불구속 입건

전북 무주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13)양을 성폭력한 혐의(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7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아무개(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성폭력 뒤 ○양에게 용돈으로 5000원~1만원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덕일 무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성폭력범들이 ○양의 휴대전화로 연락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도 이런 사실을 장기간 알아채지 못했다. 피의자들이 1~6번씩 성폭행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양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진술을 제대로 못해 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수사 절차 안에서 제대로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지적장애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배제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어야 한다.

김씨는 ○양이 성폭력을 인지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고 자신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을 성폭력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통제와 억압되어 왔다. 장애특성 상 성폭력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와 관련해서 지적장애인에게 맞춰진 교육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여성에게 권리로서 접근한 성교육 제도가 마련 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표현 분석

1. 장애자, 장애우 그리고 장애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1989년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고,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이다. 장애우의 ‘우’는 친구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동년배이거나 실제 친구 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로, 상대의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지칭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2. 정확한 장애유형명 사용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정신지체 3급 정신지적장애, 지능장애	지적장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명을 사용하고 있거나 전혀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제시된 장애유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3.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지적장애를 앓는, 청각장애를 앓는	지적장애인 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장애를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혹은 해당 장애 유형으로 표기하면 된다.

4. 정상인과 비정상인 ? 일반인과 특수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장애’ 지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일반인의 성폭력 사건처럼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삭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탕이 된 부적절한 표현이다.

5.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무능력한 ~ 엎혀사는 (지적장애여성) 사리판단을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로 인해 제한성을 갖게 되는~ 장애로 인해 사회적 취약성을 갖게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표현보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제한성이나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지적장애인 “보호제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지원체계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게 하는 표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결핍된 사람,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하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다. 또한 국민으로써 당연히 지원받아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인식하게 하는 문제적인 표현이다.

7.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시각장애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삼중고의 장애인 시각장애를 극복한	-

장애를 극복해야할 고난이나 무거운 멍에로 표현하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다. 더불어 장애를 가진 인간으로의 가치에 대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제적 표현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유념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

8.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고유한 문화의 불인정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농아인이 일반인의 말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농아인의 언어인 수어가 있다는 것과 청인의 언어만이 의사소통의 주요수단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함

주류의 문화권에 강제적인 편입을 강요하는 매우 권위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기사내용이므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가 공존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농아인이 오로지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언어를 버리고 음성언어, 문자언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농아인 언어권 보장의 근거 2015.12.31.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 2016.8 시행)

칼럼1.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장애여성의 성에 관한 통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이유정, 진성선, 김희정

장애인 성폭력 사건 안에서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방식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때문에 장애인이 성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것 자체로 금기시되거나 통제되고 억압되어 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망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나 활동은 마땅히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종종 지적장애여성들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이나 채팅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기대와는 달리 성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지적장애여성들은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연애를 빙자한 속임수나 약간의 협박만으로도 쉽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들이 처한 ‘사회 환경적인 조건과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여성들은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동안 무언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경험보다는 타인의 결정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받고 살고 있다. 더욱이 무성적 존재로 인식되는 이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식이나 타인과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더 나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장애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성적인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며 권리로써 장애특성에 맞는 성교육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지적장애여성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

해 인지하고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등의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언론보도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장애와 젠더에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언론보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장애여성의 성, 특히 지적장애여성의 성에 대한 통념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장애 여성의 성에 대해 통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적장애 자체에 대한 편견은 없는 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의 '장애'에 집중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장애여성의 피해자인 사건에서 장애를 강조함으로써 무능력하고 무력한 정형화된 피해자상을 형성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취약함이나 피해 내용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보다는 가해자가 범죄행위를 할 수 있었던 왜곡된 인식과 의도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제안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발전해 가는 대한민국의 언론보도를 바라본다.

칼럼2.

성폭력사건 보도, 본말전도하지 말아야! -성폭력 사건 기사의 발전적 논의 제공 역할을 기대하며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김예원, 나무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이 법원에서 선고되었을 때 보도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 선고보도와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어디 법원 어떤 재판부가 무슨 범죄행위로 기소된 누구에 대하여 얼마의 형량을 선고했다.” 라는 틀로 이루어진 정보전달식 보도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조금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판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는 정도이다.

물론 법원의 선고에 대하여 재판부, 형량, 판결내용의 일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기사를 쓰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기사는 판례를 논평하는 역할이 아닌 객관적으로 사실 그 대로를 전달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결선고’에 관한 무미건조한 정보전달식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은 그 자체로 많은 관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과정’에 대한 폭발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자세한 내막, 수사과정에서의 경찰관계자의 언급 하나하나까지 기사화된다.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주요 기사가 전달되고, 많은 수의 기사 클릭이 언론사의 수익에도 직결되는 현재 구조에 의하여, 더욱 많은 기사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자세하게 보도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양의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 댓글이나 SNS를 통해서 공분에 찬 여론이 조성된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원래 불쌍한데 더 불쌍한 존재, 무성적(無性的) 존재인 장애인이 타의적으로 성적 폭력을 당한 존재로 왜곡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불쌍한’ 사람을 ‘건드린’ 천하에 파렴치한이 되거나, ‘무성적’ 존재에게 성욕을 느낀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진 나쁜 사람 정도로 인식된다.

그렇게 1차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 법원이 시간이 흘러 선고를 내리게 되고, 언론은 이를 무미 건조하게 핵심 정보 위주로 보도한다. 대부분의 경우 검찰의 기소죄명, 법원의 양형기준 때문에 대중의 공분을 덮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미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여론은 한결같이 판결 결과를 비판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사형을 시켜야 할 사람을 고작 이 정도 밖에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선고가 내려졌을 때,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지난한 수사과정을 거쳐오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지역사회 자원은 얼마나 연결되었는지, 지원이 전혀 없었다면 왜 그러했는지 등이다. 나아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정책이나 제도가 무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음을 기사로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성폭력 보도 기사에는 성폭력이 가해자의 장애나 일탈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 원인이 ‘권력(지위, 신분, 성)관계’에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본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성을 살해하고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가해자의 장애(조현병)를 사건의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권리 혹은 자격이 남성에게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갔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이것 하나뿐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캐나다 판사 마빈주커의 판결문은 얼마 전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외의 대안적 사례들이 한국사회의 성폭력 관련 보도에도 많이 다뤄져야 한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사회관점이나 제도를 변화시켜 건강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언론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폭력 관련 보도는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고, 피해정황의 선정적 묘사가 지나치게 자세하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이 진정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까? 언론은 그러한 내용 보다는 국내의 성폭력 관련 논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분석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사가 많아져야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대중들의 분노만을 자극하는 가십성 기사가 아닌 비판적 감시, 왜곡 없는 정확한 정보 제공, 대안제시 기능을 하는 기사를 통해 언론이 가진 사회적 힘을 제대로 실현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음자문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기존의 성폭력 사건의 보도지침과 더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기억하면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성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나치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해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무능력함으로 그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비인격화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장애여성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짐승이나 악마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 장애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 피해를 축소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이 한 행동을 “몹쓸 짓”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 장애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지 장애여성만 보호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 범죄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범죄행위의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장애에서만 찾다보면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된다.
-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고 인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장애를 병적인 것(장애를 앓는), 비정상적인 것(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일반인에 비해~)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차별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보도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정적인 이미지로 장애여성의 피해를 더욱 과장되게 표현 하는 것은 도리어 장애여성 성폭력의 일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출처: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2014)_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0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02.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03.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04. 신중하게 보도하기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

0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양성불평등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낮은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이 여성의 순결을 훼손한 일, 치유되거나 극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02.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03.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 언론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04. 신중하게 보도하기

-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05.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

- 언론은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나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인권보도준칙 포함)

제 목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및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게, 장애인 보도 준칙을 포함한 (붙임 2)의 「인권보도준칙」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방송과 신문에서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질 것.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이나 표현 문제는 장애인단체의 언론모니터링을 촉발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대 일간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가 사용된 바 있으며¹¹⁷⁾,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언론모니터에서는 ‘병어리’, ‘절름발이’, ‘장애

117)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심미선 외, 2013) : 201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이상 10개 일간지이며, 지상파방송은 KBS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이상 3개 방송, 종편 및 전문보도채널은 채널A <종합뉴스>, TV조선 <뉴스쇼 판>, <주말뉴스 토, 일>, MBN <MBN 뉴스 8>, JTBC <JTBC NEWS 9>, <JTBC 주말뉴스>, 뉴스Y <뉴스Y> 이상 4개 채널을 대상으로 상반기(2013.6.3~6.30), 하반기(2013.9.2~9.29) 실태조사

자', '장님', '귀머거리', '정신박약', '불구자' 등의 용어가 2011년 344건, 2012년 296건, 2013년 22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⁸⁾

신문기사 등 대중매체에서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 등의 용어나 표현 사용이 장애인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2013년 174건, 2014년 1건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사용이나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언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의 장애 관련 용어 사용과 표현 문제를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

III. 검토

1.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0대 일간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 사용 건수가 상반기 모니터링 기간 내(2013. 6. 3. ~ 6. 30.) 8건이 발견되었으며, 하반기 모니터링 기간 내(2013. 9. 2. ~ 9. 29.) 11건이 발견되었다.

118)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매년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10개 일간지,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4개 경제지에 나타난 장애인과 관련된 비교용어 및 비하용어를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왔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사용 실태>

연도 비하용어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장애자	60	56	37	153
장님	56	39	38	133
절름발이	86	46	46	178
정신박약	15	7	7	29
불구자	8	8	1	17
병어리	102	127	86	315
귀머거리	17	13	5	35
총계	344	296	220	860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의 예로는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가 대표적이다¹¹⁹⁾.

‘장애자(障礙者)’라는 용어는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心神障礙者福祉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장애자의 ‘자(者)’는 인격을 비하하는 ‘놈 자(者)’이고, 일본식 표기이므로 ‘인(人)’으로 개칭되어야한다는 청원에 의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지적장애인을 지칭하는 ‘정신박약(精神薄弱)’이라는 용어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지적장애를 성장이나 성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부정적 관점이 투영되어있다는 문제지적과 함께 비록 느리지만 지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이론적 뒷받침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지체(精神遲滯)’로 개칭되었으며, 2007년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지적장애(知的障礙)’로 개칭되었다.

‘불구자(不具者)’는 고려시대 ‘불구폐질(不具廢疾)’이라는 기록에서 기원하는 용어로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자’의 뜻으로 주로 지체장애인을 지칭하여 1980년대 이전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왔던 용어이나, 1981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개최된 ‘장애자올림픽대회’,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으로 개칭되었다¹²⁰⁾.

이상과 같이 장애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장애자’, ‘불구자’, ‘정신박약’이라는 용어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2. 장애 관련 속담과 관용구

속담과 관용구는 간결하면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서 언론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장애와 관련한 관용구로는 주로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속담으로는 ‘병어리 냉가슴’, ‘꿀 먹은 병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래는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병어리’라는 용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답답한 경우’를 빗댄 암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며, ‘귀머거리’는 ‘외부로부

119) 이 외에도 장애를 표현하는 지칭 중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담은 용어로는 (1) 어근에 ‘-이’, ‘-리’가 붙어 만들어진 경우로 주로 사람보다 사물을 가리키는 말에 더 잘 붙고, 사람에 붙더라도 부정적인 뜻을 갖는 일이 대부분인 경우로 곱사등이, 문등이, 언청이, 절름발이, 말더듬이, 외팔이, 외눈박이, 육발이, 육손이, 난쟁이, 앓은뱅이, 귀머거리, 병어리/반병어리 (2) 어근에 ‘-쟁이’나 ‘뱅이’가 붙어 만들어진 경우로 역시 부정적인 뜻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 난쟁이, 앓은뱅이, 열금뱅이 (3) 장애인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용어로 병신 등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120) 장애인 용어 변천(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2000)

터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잘못 알아 들었을 경우'에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

'절름발이'는 절름거리는 장애 상태를 비유해서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족한 양상'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며, '병어리 냉가슴'은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애 태우는 경우', '꿀 먹은 병어리'는 '무슨 일에 대한 내용이나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말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눈 뜬 장님'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장님'이라는 용어가 '눈 뜬'이라는 형용사와 결합되어져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장님 문고리 잡기)'의 원래 뜻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고리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¹²¹⁾.

이외에도 장애인 관련 속담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9,604개의 속담 중 2.7%를 차지하는 257개가 있으며¹²²⁾,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국어에만 있는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표현이 전래동화나 근대소설에 투영되면서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이나 관용구에 주로 사용되는 '병어리', '귀머거리' 등의 용어 자체는 청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이며, '장님', '소경' 등의 용어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되어왔으나,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있다.¹²³⁾

위와 같은 표현들은 비록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의미가 주로 장애인이 처하게 되는 곤궁하고, 답답하며, 난처한 상황을 빗대어 상대방이나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조롱할 때 사용된다.

IV. 판단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명칭은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121) 장애인 용어 변천(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2000)

122)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장애인 관련 속담은 전체 속담 9,604개의 2.7%로서 257개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관련 속담으로는 '봉사 안경 쓰나 마나', '눈먼 놈이 앞장 선다', '귀머거리 눈치 빠르다', '반병어리 축문 읽듯', '얕은뱅이 용쓴다', '엷어 맥고 짝어 맨 곰보도 저 잘난 맛에 산다', '미친년의 치맛자락 같다', '병신 고운 데 없다', '병신자식이 효도한다' 등이 있다 (이정복, 2014).

123)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중 '소경'은 고려시대에 종사품 벼슬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봉사'는 조선시대 종팔품 관직 명칭이었음. '봉사'라는 명칭은 이후 효녀 심청과 심봉사 이야기를 통해 널리 보급됨. '장님'이란 명칭은 조선 중기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맹청을 설립하고 단체활동을 하였던 데, 손위 시각장애인을 '장(長)에 높임말인 님을 써서 '장님'이라고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하나, 이후 무당의 장님 타령 등으로 인해 경멸하는 호칭으로 전칭되었다(장애관련용어의 중요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00)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오늘날 국어학계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를 ‘차별언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올바른 용어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¹²⁴⁾

하지만, 언어가 사회·문화적 토대를 반영하여 변천한다는 점 그리고 단어나 용어의 의미는 의사소통의 관계와 문단의 문맥 속에서만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와 장애 관련 속담이나 관용구의 사용이 무조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언어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과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이나 장애 관련 속담 및 관용구 사용은 개인에 의해, 사적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판단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장애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장애자’, ‘불구자’, ‘정신박약’이라는 용어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고, 속담이나 관용구에 인용되는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비유대상이 됨으로써 정서적 상처나 굴욕감을 가지며, 인격적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장애관련 속담과 관용구들은 특정 장애인을 ‘비하’ 하여 사회적 평판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은 평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 용어의 반복적 사용은 불리한 위치에 처

124) 학계에서는 성·인종·장애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는데, 이정복 대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차별언어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최민희 국회의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용어들을 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법제처는 2014년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4개 법령에서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며, 부령 및 행정규칙 등은 소관부처별로 2014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해 있는 집단에게 억압과 멸시의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향유자로서의 인식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특히 구(舊)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서 개칭된 지 25년이 지났으며, 장애 상태를 빚된 속담과 관용구가 가진 의미가 다분히 부정적이고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누차 제기되어왔으며, 충분히 다른 용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대체용어 등이 권장되어왔다¹²⁵⁾.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4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언론과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에서 이러한 표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의 근절” 노력에 거스르는 것이며, 조약 체결 당사국으로서 대중인식 캠페인, 유아기부터의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언론기관에의 권장,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장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표현 관행은,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125)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모니터보고서』(장애인민저실천운동본부, 1997~2013),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2011), 『올바른 장애용어 및 표현을 위한 언론가이드북』(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3)

V.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붙임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서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로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붙임 2]

인권보도준칙¹²⁶⁾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126) 언론보도준칙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인권보도 공동캠페인 광고(2011.4.27~5.25)를 시작으로 언론계, 법조계, 학계,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운영(6.24~8.5), 언론시민단체와의 간담회(7.15~7.26), 인권보도준칙을 위한 세미나(2011.7.29)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2011.9.23. 제정됨. 이후 인권보도준칙 확산을 위해 인권보도수첩배포, 매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 교육 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한 표현.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 라.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마. 자살 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 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
 -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아동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특정인의 인격권, 무죄추정원칙,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며 다양한 인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 보도는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2011. 9. 23.)의 세부 기준으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인들이 준수해줄 것을 권고한다.

■ 총강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와 함께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 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 왔다. 언론은 이런 맥락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성범죄 보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언론은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3. 언론은 성범죄를 사회적 성역할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 피해자의 도덕 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언론은 사회적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

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천 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10. 언론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한다.

2012년 12월 11일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개

장애여성 인권운동 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 2월 14일 창립하여 정상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고 장애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속선에서 2001년 8월 31일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위기개입을 통해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당사자를 포함 사회 전반의 성 인권 의식의 향상과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높이기 위한 성 인권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그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

- 위기개입과 상담
-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
- 의료비 지원 및 연계 등 의료적 지원
- 고소 및 재판 지원 등 법률적 지원
-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연계

장애여성 인권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인식개선 활동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 성폭력 관련 법률 재/개정 활동
-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연구

성폭력 예방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개별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혁

- 2016년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 언론 및 수사·법적절차의 비판적 분석에 관한 토론회
- 2015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사업
- 2014년 <장애인성폭력 판결 들여다보기> 장애인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발간 및 발표회 (공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공동)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제작 (공동)
 장애인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공동)
- 2013년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 합창단 앨범 '차별 없는 그런 세상' 제작
- 2012년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 발간 및 교육 진행
 법무부 연구용역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특성과 법률조력인의 지원에 관한 연구'
 대법원 연구용역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공동)
- 2011년 성폭력상담소 10주년 기념행사 '그녀들, 다시 노래하다'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 합창단 '일곱 빛깔 무지개' 활동 시작
- 2010년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판례분석 쟁점토론회
-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내 발달장애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토론회
 책 <장애여성, 성성을 밝히다> 성인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교재 발간
- 2008년 지적장애여성자조모임 사진 전시회 '낮달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개최
 책 <장애여성활동 10년사> 발간
- 2007년 지적장애여성 성교육프로그램 연구 : 임신과 낙태 안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찾기
- 2006년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5주년 기념파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십분의 일 혹은 십 분의 구'
- 2005년 지적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매뉴얼 제작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 활동 시작
- 2003년 장애여성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시작 (~ 2016년 6기 수료)
 책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자료집 : 지체장애여성을 중심으로> 발간
- 2002년 장애여성 성인식 실태조사와 토론회
- 2001년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개소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언론 및 수사·법적절차의 비판적 분석에 관한 토론회-

발행처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인	배복주
만든이	배복주, 민들레, 여름, 나무
편집	더지
인쇄	노란들판

☒ 본 책자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